

202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기관운영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CONTENTS

2023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기관운영 -

◆ 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주요변경내용	iii
-------------------------------------	-----

PART 01 노인보호전문기관

제1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의 이해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목적	5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거법령	5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추진방향	5
라. 노인학대의 이해	6
1)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5호)	6
2) 노인학대행위자 정의	7
3) 노인학대의 유형	7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5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27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7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9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 업무협조 관련 사항	33
4) 노인학대의심사례 업무진행도	35
5)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행체계	36

CONTENTS

제2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	39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39
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 및 관리	46
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46
2)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50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	50
1) 교육 목적	50
2) 교육 유형	51

제3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사업

가. 교육사업의 목적	55
나. 교육사업의 유형	55
1) 노인학대 예방 교육	55
2) 노인인권교육	64

제4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홍보사업

가. 홍보사업의 목적	85
나. 홍보사업의 유형	85
1) 방법	85
2) 기관의 역할	87
3) 홍보사업의 평가	87
4) 홍보사업 보고서 작성방법	88

제5장 전산시스템 업무지침

가. 전산시스템 관리	95
1) 목적	95
2) 전산시스템의 관리	95
나. 전산시스템 사용 시 기본사항	98
1) 사용자 인증 및 권한	98
다. 실적 검토 방법	101
1) 실적검토 내용	101
2) 실적 입력 시 유의사항	102
3) 실적 검토사항	105

제6장 협력체계 구축사업

가.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109
1) 행정기관	109
2) 경찰관서	116
3) 119 구급대	117
4) 국민건강보험공단	117
5) 의료기관	117
6)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118
7) 법률기관	119
8) 신고의무자 직군 등	120

CONTENTS

제7장 부 록

[부록 1] 교육 실적 보고서	125
[부록 2] 홍보 실적 보고서	126
[부록 3] 전산시스템 등록사례 열람기록부	128
[부록 4] 인력현황보고	129
[부록 5] 신분조회 요청서	130
[부록 6] 신분조회 동의서	131
[부록 7]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132
[부록 8] 노인학대 현장 동행요청	133
[부록 9]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134
[부록 1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기관 현황	135
[부록 11]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설·기관→시·군·구]	136
[부록 12]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군·구→시·도→복지부]	137
[부록 13]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138
[부록 14]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전산 업무지원 요청서	139
[부록 15]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140

참고자료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143
------------------	-----

PART 0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1장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151
나. 설치배경	151
다. 법적근거	151
라. 사업내용	152
마. 용어정의	152

제2장 설치 및 운영

가. 지정 및 운영주체	153
나. 시설 기준	153
다. 종사자 기준 및 업무내용	155
라. 운 영	156
마. 관리 및 감독	158

CONTENTS

제3장 입소(이용) 및 퇴소

가. 서비스 절차	160
나. 서비스 내용	161
다. 입소 및 이용	163
라. 퇴 소	165

제4장 기타 행정사항

가. 장부 등의 비치	167
나. 비밀보장	168
다. 후원금 집행 및 관리	168
라. 입소노인 사망 시 조치사항	169
마. 실적보고	169

제5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업 관련 필수·기타 서식

가. 쉼터 입소 필수 서식	170
나. 쉼터 생활 필수 서식	170
다. 퇴소 필수 서식	171
라. 입소노인 사망 시 필수 서식	171
마. 기타서식	171

〈서식 1〉 쉼터 입소 의뢰서	173
〈서식 2〉 노인 보호 동의서	174
〈서식 3〉 쉼터 입소 동의서	175
〈서식 4〉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176
〈서식 5-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77
〈서식 5-뒤〉 개인정보 보호법	178
〈서식 6〉 비상응급 사례발생에 대한 각서	179
〈서식 7〉 입소자 관리 카드	180
〈서식 8〉 입소자 건강 카드	181
〈서식 9〉 쉼터운영일별 운영 일지	182
〈서식 10〉 근무일지	183
〈서식 11〉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184
〈서식 12〉 입소자 면회 일지	185
〈서식 13〉 쉼터 퇴소 동의서	186
〈서식 14〉 신병 인수/인계증	187
〈서식 15〉 사망사례 개요	188
〈기타서식 1〉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서	189
〈기타서식 2〉 프로그램 신청서	190
〈기타서식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점검표	191
〈기타서식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서	192
〈기타서식 5〉 쉼터 입소 확인서	193
〈기타서식 6〉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	194
〈기타서식 7〉 자아존중감 척도	197
〈기타서식 8〉 업무분장표	199
〈기타서식 9〉 비상시 업무 분장표	200
〈기타서식 10〉 교육실시 현황	201

CONTENTS

〈기타서식 11〉 교육결과 보고서	202
〈기타서식 12〉 안전점검표	203
〈기타서식 13〉 화재예방 자율점검표	204
〈기타서식 14〉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	205
〈기타서식 15〉 프로그램 운영현황	206

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주요변경 내용

K o r e a
E l d e r
P r o t e c t i o n
A g e n c y



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주요변경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운영) 주요변경 내용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제1장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이해 4. 노인학대의 이해 다. 노인학대의 유형 - 기타 : 가정 및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 시설(이용, 생활시설) 및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입소자간 다툼 등에 의한 학대는 기타로 분류함. 단, 시설의 방임(관리 소홀)으로 인한 입소자간 학대는 시설학대로 구분함	제1장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이해 라. 노인학대의 이해 3) 노인학대의 유형 - 기타 : 가정 및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학대 추가 설명은 업무수행 지침 2권 시설학대 파트에 설명(시설(이용, 생활시설) 및 병원에서 발생하는 입소자간 다툼도 사안에 따라 시설학대로 구분 될 수 있음) 하여 정의 이외의 내용 삭제함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 기타업무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결과의 적절성 확인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 기타업무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학대판정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확인	- 명칭 수정
제2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1) 예산지원 ○ 기본원칙	제2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1) 예산지원 ○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책정된 호봉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예산을 승인해야 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 지출되었는지 확인해야함	- 기본 원칙 추가
○ 인건비 - 기관유형별로 차등지원("가"형 10명, "나"형 9명, "다"형 8명)	○ 인건비 - 기관유형별로 차등지원("가"형 10명, "나"형 9명, "다"형 8명)	-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검직 관련 부분 내용 추가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 기관별 근무인력별 인건비(정부 보조금, 법인 전입금, 지자체 지원 등을 구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후 집행 - 입·퇴사, 휴직 등 근무인력의 이동시 해당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	- 기관별 근무인력별 인건비(정부 보조금, 법인 전입금, 지자체 지원 등을 구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후 집행 - 입·퇴사, 휴직 등 근무인력의 이동시 해당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 ※ <u>업무시간 내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검직(시간 강사, 겸임교수 등)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에 따름</u>	
○ 사업비 - 사업비 변경 시 시설장 승인 하에 목간 전용 가능 ※ <u>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참조</u>	○ 사업비 - 사업비 변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전용가능 ※ <u>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등 참조</u>	-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르도록 해당 문구 삭제
○ 사업비 사용방법 - 미인가 단체 및 협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광역 시·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비 사용방법 - 미인가 단체 및 협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단서 조항 삭제
3) 후원금의 사용 ○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5%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3) 후원금의 사용 ○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5%는 <u>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u>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u>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u>	- 지정 후원금 내용 수정(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
2.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 및 관리 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 및 관리 2)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 <u>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화</u> - <u>노인보호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환류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공통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후 관할 광역 시·도에 제출(23년 보건복지부 → 광역 지자체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양식배포)</u>	- 노인보호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공통양식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지침 추가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 해당양식 활용하여 매년 제출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은 매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과보고서(결산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할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보건복지부로 제출	
3.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 나. 교육유형 • 노인보호전문상담원과정 : 100시간 이하(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내용 : 상담관련 교육을 위주로 교육, 홍보, 네트워크 등 사업관련 영역과 기타 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구성 ※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 2) 교육유형 (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계별 교육 • 교육과정 : 80시간 이상 - <u>노인보호전문상담원 과정(한국보건복지인재원)</u> - <u>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온라인 실무 교육 플랫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u> • 교육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u>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채용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과정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온라인 실무교육 플랫폼 기초과정을 이수 후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사원증 발급 후 한달 내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u> • 교육내용 - <u>(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보호사업 관련 이론 및 상담원의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 힐링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등</u> ※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 <u>(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사례개입 방법 등 현장기반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u> - <u>신규상담원부터 기관장까지 노인보호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순차 개발·탑재하는 방식으로 매년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반영</u> ※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방법: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터치클래스' 검색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온라인 실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 구체화하여 명시 -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발급 신청 기준 명시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제3장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 다.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교육의무 및 교육방법 2)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 사이트를 통해 이수 <table><tr><td>자료형태</td></tr><tr><td>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발</td></tr><tr><td>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td></tr></table>	자료형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제3장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 다.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교육의무 및 교육방법 2)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 사이트를 통해 이수 <table><tr><td>자료형태</td></tr><tr><td>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발</td></tr><tr><td>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의료인편)</td></tr></table>	자료형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의료인편)	- 문구 추가
자료형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자료형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의료인편)								
마.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구체적 교육 방법 등은 「노인학대 예방교육 매뉴얼」 참조	(2) 기관의 역할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노인학대 예방교육 매뉴얼 삭제						
4) 교육사업 보고서 작성방법 가) 예방교육사업 ② 세부사항 (중략) 예) A시설에서 20명, B시설에서 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횟수는 2회, 인원수는 50명으로 입력하고 세부 내용란에 세부사항 입력 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로 신청, 교육 실시 결과 종사자 5명, 입소어르신 20명 교육 실적 입력 시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명 기재 후, 입소어르신 20명은 비교란 기재 예) A고등학교 1, 2, 3반으로 각 40명씩 교육실시, 횟수는 3회 인원수는 120명으로 입력 후 비교란 세부사항 입력	4) 교육사업 보고서 작성방법 가) 예방교육사업 ② 세부사항 (중략) 예) 동시간에 A시설에서 20명, B시설에서 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횟수는 2회, 인원수는 50명으로 입력하고 세부 내용란에 세부사항 입력 예) 동일한 날짜, 동일 주제, 동일 장소 이나 다른 시간(오전, 오후로 나누어)에 A시설에서 20명, B시설에서 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횟수는 2회, 인원수는 50명으로 입력하고 세부 내용란에 세부사항 입력 (중략) 예) A고등학교 1, 2, 3반으로 각 40명씩 별도 교육실시, 횟수는 3회 인원수는 120명으로 입력 후 비교란 세부사항 입력	- 보고서 작성 방법 예시 추가						
나. 노인인권교육 3) 교육대상	2) 노인인권교육 3) 교육대상	- 내용 추가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15881호) 제4조2항 :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다)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table><tr><th>구 분</th><th>역 할</th></tr><tr><td rowspan="2">노인보호전문기관</td><td>중 앙 •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td></tr><tr><td>지 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td></tr></table>	구 분	역 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앙 •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지 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다)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table><tr><th>구 분</th><th>역 할</th></tr><tr><td rowspan="2">노인보호전문기관</td><td>중 앙 • <u>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u> • <u>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u> • <u>노인보호전문기관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u> </td></tr><tr><td>지 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u>대면, 비대면</u>)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 (방문 교육) </td></tr></table>	구 분	역 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앙 • <u>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u> • <u>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u> • <u>노인보호전문기관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u>	지 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u>대면, 비대면</u>)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 (방문 교육)	- 인권교육 기관 역할 명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시 계획 제출 및 실적 마감 관련 사항 명확화
구 분	역 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앙 •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지 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구 분	역 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앙 • <u>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u> • <u>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u> • <u>노인보호전문기관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u>											
	지 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u>대면, 비대면</u>)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 (방문 교육)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시 계획 제출 및 실적 마감 - (실시계획 제출) 각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인권교육 실시 계획을 취합하여 교육 수강 대상 관련 협회 및 단체로 홍보 예정으로 익월 교육 계획을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공문 제출 - (실적 마감) 매월 노인인권 집합 교육신청 플랫폼을 통해 운영 실적 취합 및 현황 파악 진행 예정 이므로, 전 월 진행한 교육 등록 및 수료 차이를 매월 5일 전 까지 마감하도록 함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인권교육 실시계획 제출 및 실적 마감에 대해 매달 말 공문을 통해 요청 예정	
6) 인권교육 실시 나) 교육방법 - 비대면교육 : 개인별·시설(기관) 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한시적 적용)	(6) 인권교육 실시 나) 교육방법 - 비대면교육 : 개인별·시설(기관) 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2023년까지 적용)	- 코로나 관련 2023년까지 적용
다) 교육 신청방법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교육 신청방법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을 통해 매월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일정 확인 가능	- 교육 신청방법 추가
[방문교육] <추가>	<방문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u>지자체는 노인학대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인권교육(방문) 대상임을 통보</u>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세부교육 일정은 2023년 3월~4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협회, 기초자치 단체에 홍보	- 노인복지법 및 고시 내용 추가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③ 하단의 '노인인권' 클릭→교육과정명 '함께쓰는 노인인권 이야기' 클릭 →수강신청 클릭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23년 2월부터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③ 하단의 '노인인권' 클릭→교육과정명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 2023년 노인인권 의무교육 클릭 →수강신청 클릭	- 교육명 등 변경
라) 교육 이수증 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함 -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홈페이지(www.noinedu.or.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	라) 교육 이수증 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함 -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에서 출력(단체, 개인)	- 내용 추가
8)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나)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대상: 전년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2021년 근무하였던 종사자 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8)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나)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3월 10일 까지 2023년 실적 제출 ○ 제출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단, 당해연도 12월 중 입사자의 경우 (12.1~)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 할 수 있음(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첨부) 예시) 2023.12.1. 입사자 → 2023년 교육 대상자 제외 (2024년 교육대상자)	- 연도 표기 등 내용 수정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Q&A [인권교육]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Q&A [인권교육]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 문구 삭제
	제5장 전산시스템 업무지침 다. 실적 검토 방법 1). 실적검토 내용 2). 실적 입력 시 유의사항	- 실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등 설명 추가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제6장 협력체계 구축사업 가. 행정기관 3)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제6장 협력체계 구축사업 1) 행정기관 (3)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u>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등에 의거하여 고발하여야 함</u>	- 행정기관 역할 추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주요변경 내용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제2장 설치 및 운영 4. 운영 ○ 회계관리 - 사업비(운영비 포함)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가능 • 전용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를 경유하여 복지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	제2장 설치 및 운영 라. 운영 ○ 회계관리 - 사업비(운영비 포함)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가능 사업비(운영비 포함) 전용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u>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등)</u> , <u>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u> 등을 참고하여 <u>전용 하</u> 여야 함	- 재무·회계 규칙을 참고 하도록 관련 사항 삭제 및 추가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공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공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관리 및 감독 ○ 시·도 (중략) -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마. 관리 및 감독 ○ 시·도 (중략) -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현장점검 반기에서 연 1회로 수정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변경사유
제3장 입소(이용) 및 퇴소 3. 입소 및 이용 ○ (건강검진) '입소 후 72시간 이내' 반드시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입소토록 하고, 입소 후 '1주일 이내' '건강진단서' 및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구비 - 단, 입소기간이 72시간 이내여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사유를 기재 (중략) ○ (이용수칙 규정) 입소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등을 쉼터별로 제정하여 운영 - 이용수칙 안내시 종사자 대상 폭행·폭언 금지 규정 안내	제3장 입소(이용) 및 퇴소 다. 입소 및 이용 ○ (건강검진) '입소 후 72시간 이내' 반드시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입소토록 하고, 입소 후 '1주일 이내' '건강진단서' 및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구비 - 단, 입소기간이 72시간 이내여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함 (중략) ○ (이용수칙 규정) 입소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등을 쉼터별로 제정하여 운영 - 이용수칙 안내시 종사자 대상 폭행·폭언 금지 규정 안내 ※ <u>쉼터 종사자(연1회 이상) 및 입소자(입소 시)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해야함.</u> - <u>입소자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u> - <u>종사자와 입소자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u>	- 쉼터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추가
제4장 기타 행정사항 3. 후원금 집행 및 관리 ○ 쉼터에 대한 후원금 발생 시 -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후원금의 15%를 모금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제4장 기타 행정사항 다. 후원금 집행 및 관리 ○ 쉼터에 대한 후원금 발생 시 -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후원금의 15%는 <u>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u>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u>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u> 참고	- 후원금 관련 사항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고하도록 수정

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PART 01 노인보호전문기관

- 제1장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이해
- 제2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 제3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사업
- 제4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홍보사업
- 제5장 전산시스템 업무지침
- 제6장 협력체계 구축사업
- 제7장 부 록





제1장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이해



01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이해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목적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을 보호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6조, 제6조의2, 제31조,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9까지, 제39조의11, 제39조의12, 제39조의15에서 제39조의18까지, 제39조의20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의 추진방향

- 노인학대예방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
 - 공익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노인학대 사례 발굴 확대
- 노인학대 개입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적극적인 노인보호 수행
 - 학대피해노인, 노인학대행위자,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일시보호
 - 중앙 및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체사례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
-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
 - 학대피해 노인 및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라.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5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함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TIP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수혜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를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의제1호)
-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2의제2호)

2) 노인학대행위자 정의

- “노인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발생 공간 및 학대행위자에 따른 분류
 - 가정 내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학대
 -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이용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기타 재가 서비스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병원 내 : 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병원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공공장소 : 광장, 길거리, 학교, 역, 극장, 온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에게 이루어지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 행태적 분류

유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판정지표]

□ 신체적 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밀치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예: 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예: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예: 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예: 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예 : 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절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통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성적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 경제적 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방임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예: 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예: 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예: 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예: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예: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예: 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예: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 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예 : 약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방임 - 자기방임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유기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예: 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학대 판정지표는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이며 학대 정황 및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이 이루어져야 함

※ '대표적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을 판정하기 위한 대표적 행위만을 나열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여 노인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

□ 신체적 학대

▪ 지표 1 : 노인을 폭행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	☑ 주먹으로 친다. ☑ 뺨(따귀)을 툭툭 치거나 때린다. ☑ 꼬집는다. ☑ 핼퀴다. ☑ 머리를 쥐어박는다. ☑ 발로 찬다. ☑ 멍이 들 정도로 탁탁 친다.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친다. ☑ 머리채를 움켜잡거나 잡아당긴다. ☑ 머리,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다. ☑ 팔 또는 발을 비튼다.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	☑ 막대기, 곤, 빗자루 등으로 구타한다. ☑ 신문, 서류철 등으로 친다. ☑ 베개 등으로 친다. ☑ 이불 등을 덮은 후 때린다. ☑ 물건을 던져 노인이 맞는다. ☑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한다. ☑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누르거나 억압한다.	☑ 목살을 추켜잡는다. ☑ 목을 조르거나 누른다. ☑ 몸을 제압하거나 누른다. ☑ 발로 몸을 밟아 누른다. ☑ 입을 막거나 입술을 꼭 잡는다. ☑ 몸을 벽이나 구석으로 밀어붙인다.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	☑ 몸의 일부를 잡고서 끌고 다닌다. ☑ 사지를 붙잡고 이동시킨다. ☑ 손이나 발로 툭툭치며 다룬다. ☑ 짐짝처럼 마구 다룬다. ☑ 손 대신 발로 노인을 다룬다.

■ 지표 2 :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	☒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에 억제대(벨트, 조끼, 장갑 등)를 사용한다. ☒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 ☒ 전신 억제대를 사용한다. ☒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한다.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	☒ 억제대가 아닌 도구(끈, 천, 수갑, 테이프 등)로 몸 또는 몸의 일부를 구속한다. ☒ 억제대가 아닌 도구로 침대, 기동 등에 묶는다. ☒ 침대 난간 높이를 높게 하거나 철책을 설치하여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다.	☒ 방 또는 격리실 등에 자물쇠, 끈, 막대기 등을 설치하여 못나오게 한다. ☒ 방 또는 일부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협적으로 막는다. ☒ 벽만 응시하여 보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시설 밖으로 못나가게 감금하거나 감시하며 막는다.

■ 지표 3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위험한 도구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주사기 등을 들이대어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의자, 양동이, 화분, 유리컵 등)을 던져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벽을 치거나 거울을 깨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주변에 있는 집기나 물품(예: 의자, 침대, 침구 등)을 발로 걷어차며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지표 4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단절한다.	☒ 탈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물을 주지 않거나 단절한다. ☒ 영양실조에 빠질 만큼 최소량의 음식도 주지 않거나 단절한다.
노인에게 강제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의료처치를 하여 생명을 저해한다.	☒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강제로 먹인다. ☒ 강제로 주사를 놓는다. ☒ 강제로 불필요한 의료처치를 한다.
노인의 치료 및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한다.	☒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주사제 또는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하여 치료를 방해한다.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단절한다.	☒ 냉, 난방을 단절한다. ☒ 수도, 전기, 가스를 단절한다.

■ 지표 5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농지 경작 또는 임야 정리 등의 일을 시킨다. ☒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시설 청소, 조리, 설거지 등의 일을 시킨다. ☒ 노인에게 사택 또는 시설장 집의 일을 시킨다. ☒ 강제로 다른 노인을 돌보게 한다(식사수발, 기저귀 교체, 목욕 등)
노인을 감금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시설 또는 다른 공간에 가두고 일을 시킨다. ☒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

□ 정서적 학대

■ 지표 1 :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 ☒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 ☒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다(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
노인을 기피한다.	☒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피한다. ☒ 자신의 손이 노인에게 닿는 것을 피한다.

■ 지표 2 :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강요한다. ☒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 종교적 물건(염주, 십자가, 목주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강요한다. ☒ 전화, 컴퓨터, 신문, 개인우편물·구독물·인쇄물 수취를 제한하거나 단절한다. ☒ 투표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가족이나 친구의 면회나 방문을 방해한다. ☒ 가족이나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방해한다. ☒ 외출과 외박을 막는다.
노인을 집단으로 따돌린다.	☒ 다른 노인들과 공모하여 따돌린다. ☒ 직원, 자원봉사자, 실습생들 간에 공모하여 따돌린다.

■ 지표 3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비난하거나 험담한다. ☒ 창피를 준다. ☒ 꾸짖거나 야단친다. ☒ 구박하거나 괘시한다. ☒ 비웃거나 조롱한다. ☒ 누명을 씌운다.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반말을 한다. ☒ 존칭어로 부르지 않거나 별명을 부른다. ☒ 아기에게 하는 말투로 구슬린다(00하면 사탕 줄게, 아 착하지 등). ☒ 아이를 나무라듯이 말한다. ☒ 노인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생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 지표 4 :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폭언을 한다.	☒ 고함(큰 소리)을 지른다. ☒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을 한다. ☒ 욕박지른다(예: 혼나볼래! 쫓겨나봐야 알겠어! 등)
노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때리는 시늉을 한다. ☒ 샷대질을 한다. ☒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 인상을 쓰며 말한다. ☒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상황을 보게 한다.

■ 지표 5 :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확실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	☒ 일률적인 헤어스타일을 강요한다. ☒ 확실적인 옷차림을 강요한다. ☒ 시설에서 제시한 일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 ☒ 개인 정보 및 의료기록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한다. ☒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막는다.
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입·퇴소 또는 전원 결정시 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 ☒ 의논 없이 임의로 방을 바꾼다.

□ 성적 학대

▪ 지표 1 : 노인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성추행을 한다.	☒ 노인에게 입맞춤, 포옹, 애무 등을 한다. ☒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다(더듬거린다, 쓰다듬다. 툭툭 친다, 꼬집는다, 비튼다, 움켜 잡는다 등). ☒ 노인에게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거나 애무를 요구한다.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다.	☒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요한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을 성폭행한다. ☒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인 노인을 이용하여 성폭행한다.

▪ 지표 2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신체를 빚대어 성희롱을 한다.(예: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다. ☒ 목욕, 기저귀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한다.	☒ 거실 등의 공용 공간 등에서 음란영상을 보게 한다. ☒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준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다. ☒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기저귀 찬 모습을 촬영한다. ☒ 알몸이나 성적 부위를 촬영한다. ☒ 촬영된 성적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다.
노인을 벗겨놓은 상태로 둔다.	☒ 옷을 입히지 않고 그대로 둔다. ☒ 알몸 또는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둔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예 : 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

□ 경제적 학대

▪ 지표 1 :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연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당(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챈다. ☒ 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 퇴소 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다.	☒ 퇴소 시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일자리, 부업 등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다. ☒ 시설 내 대체인력으로 활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표 2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재산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금융 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을 날조한다. ☒ 동의 없이 부동산 또는 고가의 동산의 명의를 변경한다.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도용).	☒ 동의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사채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동의 없이 노인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동의 없이 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을 계약한다.

▪ 지표 3 : 노인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을 통제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현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등을 강요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현금을 비롯한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한다.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소유하려고 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금융 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을 강요한다.

□ 방임

▪ 지표 1 :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식사 및 수분공급을 방치한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스스로 수분 섭취가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질환에 따른 식사(예: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등)를 먹이지 않는다. ☒ 대소변을 자주 본다고 물과 음식을 적게 먹인다.
노인에게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한다.	☒ 옷을 과격하게 입히거나 벗긴다. ☒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재촉한다. ☒ 강제로 빠르게 먹인다. ☒ 음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식판을 치운다. ☒ 기저귀, 옷, 약 등의 물건을 던져준다.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킨다. ☒ 화장실에서 배변처리를 해주지 않은 채 장시간 내버려 둔다. ☒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둔다. ☒ 스스로 세면, 양치질, 머리감기, 닦물, 목욕 등이 어려운 노인을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둔다. ☒ 의복이나 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둔다.
노인의 체위변경 및 이동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걷기 등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내버려둔다.

▪ 지표 2 :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다. ☒ 상하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인다. ☒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인다. ☒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을 먹인다. ☒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인다.
노인을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	☒ 냉,난방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 침실이 아닌 곳에서 자게 한다(예: 창고, 복도, 욕실). ☒ 감염, 전염 등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 안전사고(화상, 낙상, 감전, 충돌, 질식, 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다.
노인에게 기본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물건(의복, 침구, 위생용품) 및 비품(개인사물함, 보장구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시설에서 비위생적인 물건 및 비품을 제공한다.

■ 지표 3 :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당뇨, 혈압 등 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복용을 소홀히 한다. ☒ 욕창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삽입된 기관 및 소변줄, 장루 등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 병원 진료를 막는다(예: 공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 지표 4 :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돌봄 및 의료처치 등의 거부가 노인의 생명에 위협됨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 식사 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을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 ☒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지표 5 :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은폐하거나 방치한다.	☒ 노인이 동료 노인에게 폭행 또는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동료 직원 또는 실습생 등 돌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
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저지한다. ☒ 노인학대 사실을 가족 또는 외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협박한다.

□ 유기

- 지표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내다 버린다.	☒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길거리에 내다버린다. ☒ 소풍, 쇼핑 등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다. ☒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는다. ☒ 노인을 타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는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이며 학대 정황 및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이 이루어져야 함

※ '대표적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을 판정하기 위한 대표적 행위만을 나열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여 노인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료법 제3조제1항)
 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10.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같은법 제12조)
 11.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12.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국민건강보험법)
 1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지역보건법 제2조)
 1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노인복지법 제31조)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 해태한 자에 대한 벌칙) 직무수행 중 인지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제2호)
 - ※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신고의무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의 실시방법, 실적 제출방법 등은 “제3장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사업”을 참조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등의 수행
- ※ 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시설학대 사례 판정,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등(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적용)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 주요업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인권보호 관련 사업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총괄적 관리 및 조정
 - 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제안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실적관리
 -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평가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평가·지원
 - 업무수행지침 제작 및 배포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기초·심화 교육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 관련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전국홍보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 전국적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2) 기타업무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노인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업무 등
 -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과정의 적절성 확인
 -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학대판정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확인
 - 노인학대 분쟁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제언
 - 사업진행시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례화 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 그 밖의 노인학대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
- 노인보호사업 자문위원회
 - 노인보호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법률 개정안 제언
 - 노인보호사업 현안과제 논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 발전 방안 제시
 -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검토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안 사항 논의
 - 민·관 단체의 협력을 위한 의견제시
 -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사업 정보 공유
 - 대내외적 행사 공동 개최 및 협조
 - 각종 운영기준 검토
 - 전산시스템 개선사항 제언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주요업무(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신고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 관계공무원 및 노인복지상담원 해당

- ①, ②항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장조사 시 필요에 따라 [부록8]을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동행 요청, 학대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할 경우에는 신분조회요청서 [부록5]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㉑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 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㉒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치사항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에게 신고시설과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 관계임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 ※ 이후 현장조사, 사례이관 등 개입 절차 및 업무추진사항을 신고자에게 안내
2.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 ① 시·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공문으로 현장조사 동행 요청
 - ② 노인학대 의심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의심 시설이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공문으로 현장조사 동행 요청
 - ③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공문으로 현장조사 결과보고
 - ④ 현장조사 실시 후 반드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사례판정
 - ⑤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를 시·도 및 시·군·구에 공문으로 보고
3.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 ① 시·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이관 조치 보고
 - 사례이관 절차를 준수하여 공문으로 보고
 - ② 노인학대 의심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의심 시설이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이관 될 것임을 공문으로 보고
 - ③ 사례를 이관받은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 공무원에 현장조사 동행요청하고, 관련 정보 일체를 시·도에도 공문을 통해 내용 공유
 - ④ 시·군·구 공무원과 이관 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실시
 - ⑤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공문으로 현장조사 결과보고
 - ⑥ 현장조사 실시 후 반드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사례판정
 - ⑦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를 시·도 및 시·군·구에 공문으로 보고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생활시설 학대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 명, 시설장 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학대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문서보존기간 : 5년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관련, 별표1의2
 - 단, 전산(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자료 삭제 금지
- 운영위원회,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체사례회의 운영
-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 및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재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와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 [시행일 2021.6.30.]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21.6.30.]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시행일 2021.6.30.]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시행일 2021.6.30.]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
- 지역사회와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단위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인권교육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교육)
-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과 결산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 업무협조 관련 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 경찰관서에 동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록 8] ‘노인학대 현장 동행 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 * 학대의 응급성에 따라 현장 동행 요청서는 구두에 의한 요청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할 경우에는 신분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 또한, 신분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는 [부록 6] ‘신분조회 동의서’ 활용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무위반사실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부록 7]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활용

○ 가정폭력피해자인 학대피해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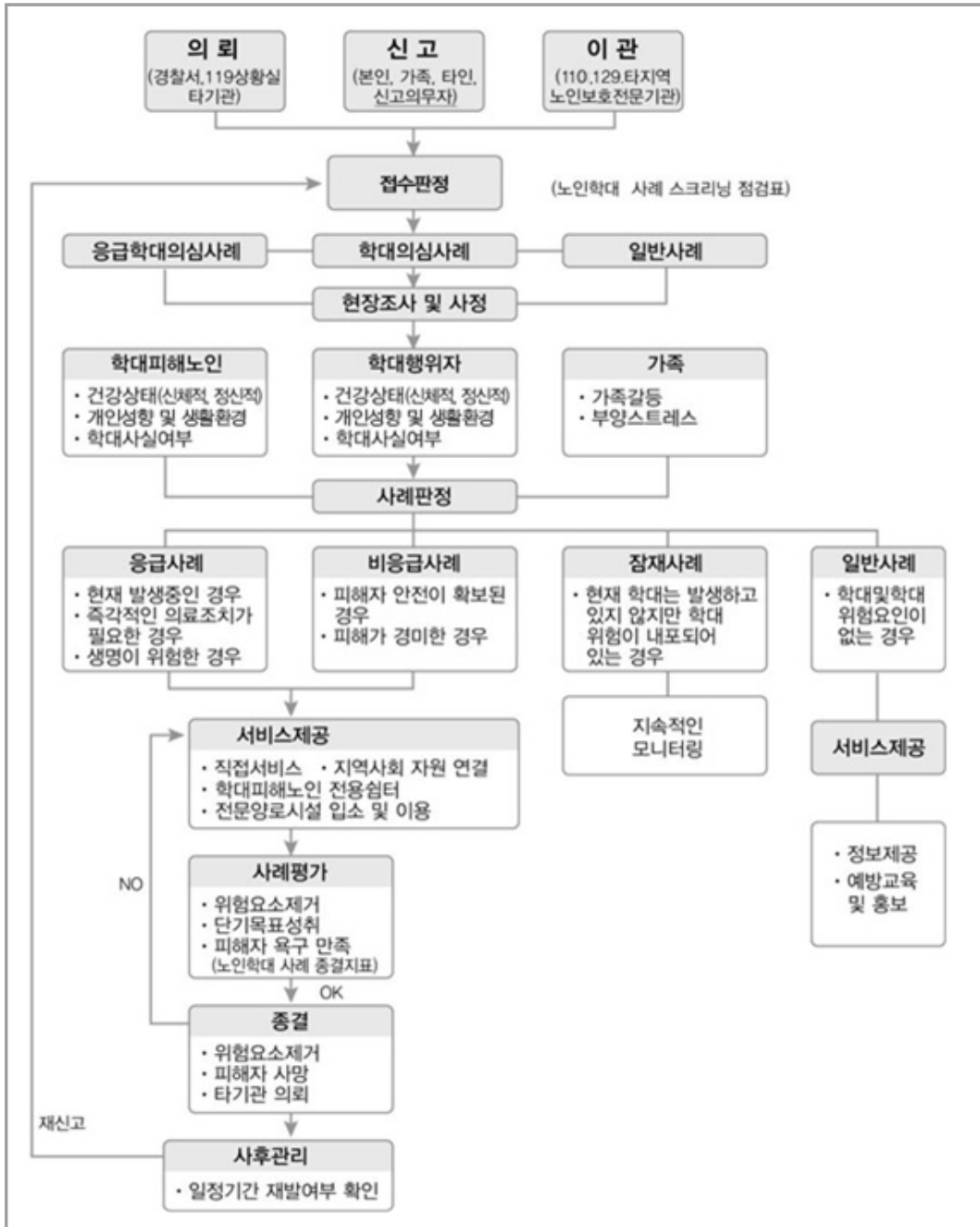
- 단, 현장조사와 사정, 사례판정을 완료하고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에만 발급
- 발급절차 : 유선상 발급 요청→학대피해노인 대면 상담(대리인 발급요청시 인감을 포함한 위임장 등 명확한 확인 필요)→발급(해당 관공서로 공문과 함께 발송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19.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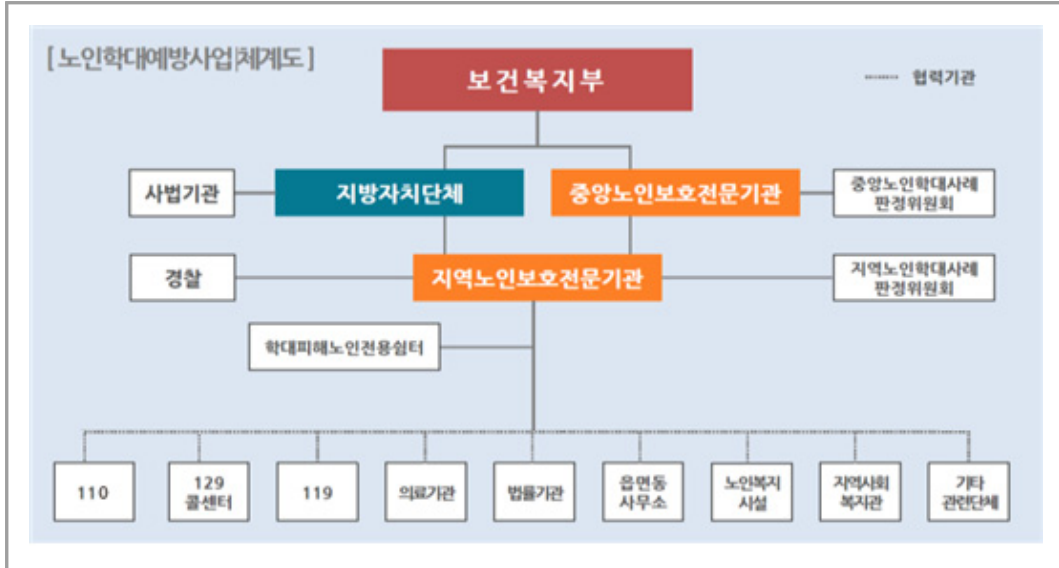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확인서

4) 노인학대의심사례 업무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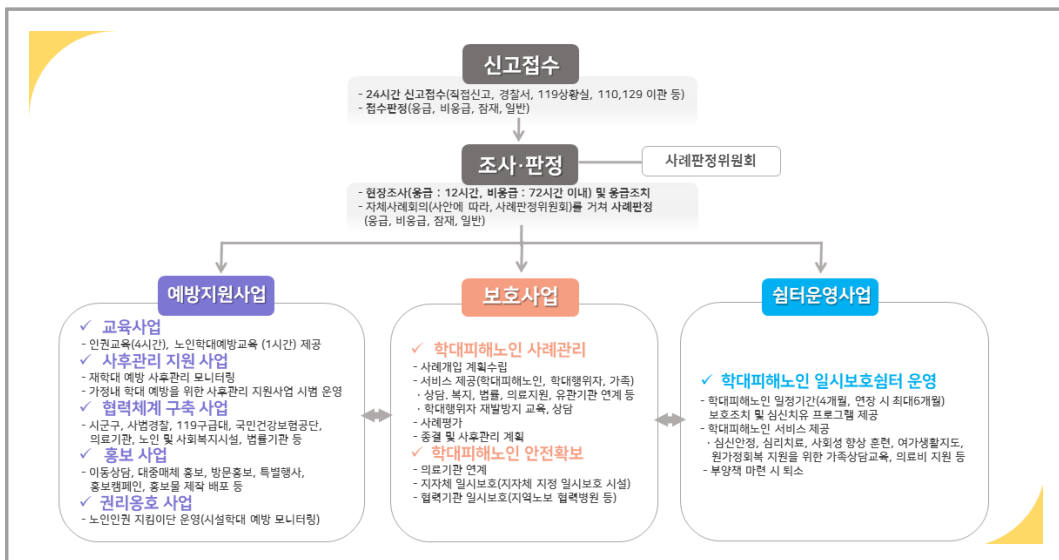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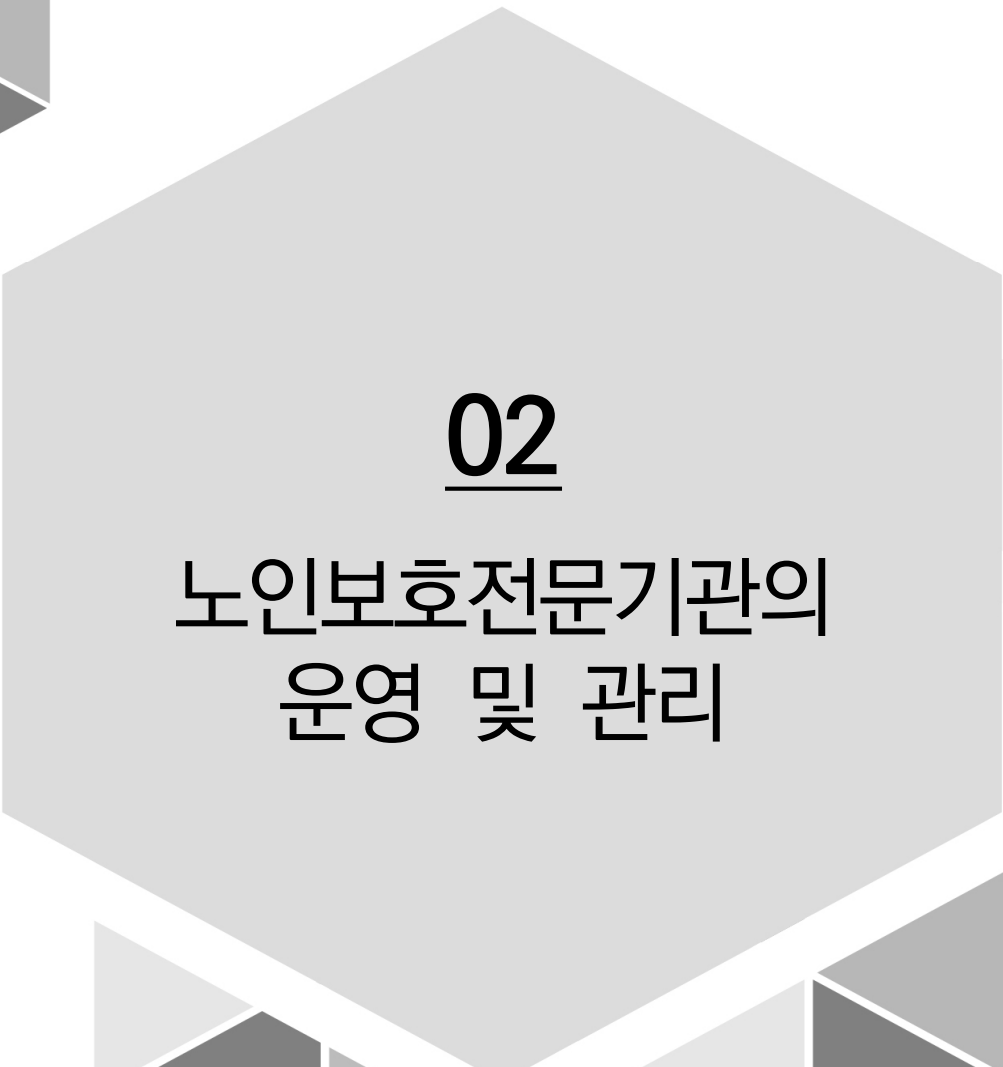
5)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행체계

○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수행 체계도





0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0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1) 예산 지원

○ 기본원칙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호봉책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하거나, 광역 시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
 - ※ 정부보조금은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분
 - ※ 광역시·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관 설치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증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시 지방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우선 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책정된 호봉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예산을 승인해야 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 지출되었는지 확인해야함

○ 인건비

- 기관유형별로 차등지원(“가”형 10명, “나”형 9명, “다”형 8명)
- 기관별 근무인력별 인건비(정부 보조금, 법인 전입금, 지자체 지원 등을 구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후 집행
- 입·퇴사, 휴직 등 근무인력의 이동시 해당사항을 시·도지사에 지체 없이 보고
 - ※ 업무시간 내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겸직(시간 강사, 겸임교수 등) 관련사항은 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에 따름
 - ※ 채용인력현황 및 복무점검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결과 시·도지사에 보고사항과 상이한 경우 차년도 인건비 배정의 불이익
 - ※ 노인학대전문상담원 근무여건(24시간 근무, 현장조사)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당직수당 등 특수업무 수당을 지자체 자체 예산 또는 법인지원금으로 지원 가능
 - ※ 사무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으므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되,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주체 자부담으로 운영 가능

○ 사업비

- 사업비 변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전용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등 참조

○ 사업비 사용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재무회계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을 적용
- 미인가 단체 및 협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
- 사업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가능
 -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과 결산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출

(2) 인건비 지원기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구조는 관장, 중간관리자, 나머지 인력은 상담원으로 함

- 기관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직급에 따른 호봉 적용
※ 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제1항에 따라 상근(常勤)하여야 함.
- 종사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원 채용
※ 단,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

- 기관장 및 종사자 임면사항은 관할 시·도에 보고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3일 이내로 “인력현황보고” 양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3) 후원금의 사용

○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4) 행정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구성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 가능
- 수탁자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사업실적 등
 - ※ 수탁자 선정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법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
 - ※ 계약의 갱신 시 사업수행 실적평가, 수탁자의 재정능력(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갱신추진
 - ※ 계약의 갱신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함

■ 시설의 위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회서비스 자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호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업의 우선 위탁을 할 수 있음**(‘22.3.25 시행)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

● 제 11조(사업의 우선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 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 11조(사업의 우선 위탁)

-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략〉

4.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110 및 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적극 홍보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 노인학대 심각성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적극 활용

-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버이날(5.8),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노인의 날 (10.2)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시·도지사는 어버이날, 노인학대예방의 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를 전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제4항」

-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시·군·구별로 최소 2개소(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각 1개소)이상을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함

- 동 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시·도는 동 기관을 지정 후 그 지정결과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결과 보고(통보) 양식〉

(시·도명 :)

연번	시설 종류	기관명	소재지	전화 번호	입소 정원	시설 규모(㎡)	현재 입소자 수		
							계	남	여

※ 지정 기관 개소 수는 관내 사례 발생 규모 및 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기관 수 확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인보호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비 지원을 통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분관 설치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분관 설치 시 추후 국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의 우선권 및 인센티브 부여

- 시·도지사는 국고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하여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사업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지원 및 협조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는 주민센터에 노인보호전문사업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노력

- 또한 소속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하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관리

- 시·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7[별지 제20호의18서식]을 사용하되, 색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7호)을 준용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부록15]을 발급함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등으로 노인학대 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 받아 폐기처분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상〉

발급번호	발급권자	발급일자	발급대상 인적사항					비고 (반납일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여 결정하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www.gosims.go.kr”에서 회원가입, 집행환경 설정과 보조사업 등록 등을 진행해야 함
- 기관 명칭의 변경
 - 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짜, 사유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함
 - 통보 시기는 최소 6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나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 기관 홈페이지,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각종 발간자료 등에 변경이 필요하므로 기관 명칭 변경 전에 위와 같은 통보 시기를 준수해야 함

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 및 관리

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관리규정 마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 다만, 지정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노인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 장부 등의 비치
 -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기관의 장 및 직원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과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신고접수 받은 노인학대 조사 및 상담 기록 건수 및 관련서류, 기관운영일지 등

○ 상담원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중 18:00시 이후 및 휴일의 경우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통해 신고전화의 접수, 상담 및 응급사례 발생 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상담원의 자격

- 기관장 및 상담원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단, 기관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음.

■ 기관장 및 상담원의 자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별표 1의 2]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2) 상담원: 1)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수탁 받은 비영리법인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를 해야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를 해야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상담원 채용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종사자)

-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노인복지법」 제39조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4항~제5항

-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관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운영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및 보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 현장점검

- 시·도지사는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주요 점검사항 : 인사 및 조직관리, 회계처리, 사례관리,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 등

○ 예·결산 보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관리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년 노인보호사업 성과지표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지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월별 실적(학대신고 건수 등)을 취합하여 전년대비 실적 현황표 및 당해 연도 성과지표를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발송

○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화

- 노인보호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환류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공통양식으로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후 관할 광역 시·도에 제출('23년 보건복지부 → 광역 지자체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양식배포)

* 해당양식 활용하여 매년 제출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은 매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과보고서(결산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할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보건복지부로 제출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

1) 교육 목적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 구성을 통해 역량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소진예방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2) 교육 유형

(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계별 교육

○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교육(연계교육)

- 상담원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 : 80시간 이상
 -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과정(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온라인 실무교육 플랫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교육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채용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과정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온라인 실무교육 플랫폼 기초과정을 이수 후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사원증 발급 후 한달 내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교육내용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보호사업 관련 이론 및 상담원의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 힐링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등
 - ※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사례개입 방법 등 현장기반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
 - 신규상담원부터 기관장까지 노인보호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순차 개발·탐재하는 방식으로 매년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반영
 - ※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방법: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터치클래스' 검색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 시에는 관할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인사변동 3일 이내)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법정보수교육)

- 법정보수교육(8시간) 중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과 관련한 과정 개설을 추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업무와 연관된 교육과정 구성

- 교육 실시기관 범위가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비영리 법인 등과 연계하여 과정개설 추진

(3) 종사자 위기개입 교육 및 바우처 제공

- 노인학대 현장에서 종사자가 겪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개입 매뉴얼”을 활용한 자체교육 및 집합교육 추진
- 심각한 수준의 위기사건은 전문적 위기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위기개입 바우처 제공



0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사업

0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사업

가. 교육사업의 목적

- 국민들이 노인학대와 노인보호전문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보호전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함
- 노인인권, 효(孝), 노인 자살예방, 노인차별해소 등 교육을 통한 노인 인식개선 및 권익 향상 도모

나. 교육사업의 유형

1) 노인학대 예방 교육

(1) 교육대상

가) 노인

- 모든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배양시켜주는 예방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노인학대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노인대상 예방교육 세부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 노인학대의 영향
 - 노인학대 대처법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나) 일반인

- 노인부양 가족 및 직장인 등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모든 노인들이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노인학대와 노인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 조정 및 문제 해결을 돕는 사회적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방목적의 교육프로그램 실시
- 노인부양 가족과 일반인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시 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 성인대상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개괄적 이해
 - 노인의 권리
 - 부양자로서의 성인자녀 역할
 - 성인자녀와 노인 간의 관계 관리
 - 부양자의 스트레스 관리
 - 노인 부양가족 지원 사회적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 청소년대상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전반적 이해
 - 노인학대의 정의 및 발견 경험 나누기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및 홍보 경험
 - 노인의 인권, 신고방법 및 서비스 연계
- 미취학(아동)대상 교육내용
 - 노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에 노인에 대한 이야기
 - 도움이 필요한 사례 제시 후 방안 찾기
 - 노인학대 예방 전반에 관한 인형극, 동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다) 신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진행
- 신고의무가 있는 자들의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 실시에 대한 협조를 구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미포함),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단,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 신고의무자대상 예방교육 세부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 기타 : 노인학대의 개괄적 이해, 노인의 권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 보수교육

-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에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시행주체 관련 부처로 협조 공문을 발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의무자 보수교육 시행주체(단체)에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등을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의 보수교육기관으로 신고의무자 보수교육 시 노인학대 예방교육 포함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

▣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과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교육의무 및 교육방법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기관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실적제출기관 : ①노인복지시설, ②요양병원, ③종합병원, ④장기요양기관
- 교육대상 : 법 제39조의6제5항의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절차

- 교육방법 : 1) 자체교육(직장내교육) 2) 온라인 교육 3) 방문교육 등 실시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연 1시간 이상)

- 1) 자체교육(직장내 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활용
2)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 사이트를 통해 이수

온라인 사이트	자료형태	비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발	회원가입 및 수강 후 수료증 발급 가능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의료인편)	
경기도지식(GSEEK)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의료인·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모두 인정됨

- 3) 집합교육(방문교육 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파견되어 진행하는 교육
○ 시·도, 시·군·구에서는 교육실적제출기관에 법 개정사항 등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 시·도(노인보호사업담당부서)→시·군·구(각시설담당부서)→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2) 시·도(의료기관담당부서)→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요양병원·종합병원
○ 교육실시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전년도 실적을 당해년도 2월 말까지 제출
2) 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
복지부(노인정책과)
- 요양병원·종합병원→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3) 제출서식 : (교육의무기관) [부록 9], (시·군·구 및 시·도) [부록 10]
※ 교육의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록 9]는 시·군·구에서 자체 보관

라) 관련기관 종사자

-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 협회,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 자원봉사자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노인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 실시

- 노인학대예방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노인학대예방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기반 마련

(2) 기관의 역할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 운영
- 노인학대 예방교육 인프라 구축
 - 중·장기 노인학대 교육 계획 수립
 -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 운영
- 노인학대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및 보급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노인, 중·장년, 청소년,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일반인, 신고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등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효행, 노인 자살 예방 교육
- 대상자별 교육 강 의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교육사업의 평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교육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평가 내용 및 방법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함
- 사업평가 결과로 도출된 현황 및 문제점에 근거하여 모색된 향후 대안과 사업방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의견 제시

(4) 교육사업 보고서 작성방법

가) 예방교육사업

구분			회	누계	명	누계	비고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대상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소계							
비신고 의무자	일반인	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중.장년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	관공서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기타관련기관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소계						
총 계							

① 기본사항

- 교육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의해 30분 이상 진행된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이룸
 -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30분 이상)외 동영상 교육 콘텐츠 활용 가능
- 교육 횟수와 인원수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요령 : 횟수, 인원수 중심(세부내용은 비교란을 통해 횟수별 인원 기재)
- 작성순위 : 교육일자 / 교육기관명 / 교육명
- 매월 실시한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월별 작성 기한 내 작성 완료

② 세부사항

- 예방교육 사업실적은 ‘교육받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기재
 - 예) A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면 실적은 노인 / 50명
- 교육 횟수 입력 시 동일인, 동일 날짜, 동일 장소, 동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1회로 입력(1회 교육이 2세션 이상일 경우 1회로 입력)
 - 예) A시설 50명 대상 교육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교육 횟수 1회, 인원 50회
- 동일한 날짜, 다른 대상, 동일 주제, 동일(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각각 횟수와 인원수를 입력(단, 다른 대상의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횟수 1회, 인원 총인원) 대상자는 교육의뢰 시 제시한 대상으로 기록 뒤, 비교란 활용하여 기타사항으로 남김
 - 예) 동시간에 A시설에서 20명, B시설에서 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횟수는 2회, 인원수는 50명으로 입력하고 세부 내용란에 세부사항 입력
 - 예) 동일한 날짜, 동일 주제, 동일 장소이나 다른 시간(오전, 오후로 나누어)에 A시설에서 20명, B시설에서 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횟수는 2회, 인원수는 50명으로 입력하고 세부 내용란에 세부사항 입력
 - 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로 신청, 교육 실시 결과 종사자 5명, 입소어르신 20명 교육 실적 입력 시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명 기재 후, 입소어르신 20명은 비교란 기재

- 예) A고등학교 1, 2, 3반으로 각 40명씩 별도 교육 실시, 횟수는 3회 인원수는 120명으로 입력 후
비고란 세부사항 입력
- 사회복지대학 및 아카데미(가칭) 등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 교육 진행 시
 - 그 교육의 주목적과 목표 및 대상을 명확히 인지한 뒤 실적 기재
 - 주대상층이 일반인과 사회복지종사자로 구분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생활지원사((구)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교육기준
 - 교육과정의 교육생 : 비신고의무자 일반인
 - 자격취득 후 현재 해당영역 종사자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 청소년, 성인·중·장년 기준
 - 청소년 : 미취학 이후 ~ 초·중·고등학생에 해당됨(청소년)
 - 성인·중·장년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성인 신고자를 의미함
※ 대학생은 성인·중·장년에 해당됨
 - 사회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 기타관련기관 종사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학(학내 종사자 혹은 교수), 종교단체 등을 기재
 - ※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일반대상 중 노인과 아동대상의 교육은 구분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교육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논의
 - 노인학대예방 교육관련 동영상 배포는 교육실적에 해당되지 않음
 - 예) 노인학대예방 교육 관련 동영상, PDF, PPT 배포 등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군별 분류 실적 기준]

- (의료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의
장과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의미함
- (방문요양)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 상담원
-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 생활지원사(구)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포함
- (장애인시설, 장애인상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 기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2) 노인인권교육

(1)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3)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칙(제15881호) 제4조2항 :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5)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가) 인권교육기관의 종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제4항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

-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 ①국가인권위원회, ②노인보호전문기관, ③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지정

- 추가지정 인권교육기관

-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지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교육 수요대비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강사 등이 부족한 경우 등),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추가지정 공고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필요시)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인권교육기관 지정

다)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구 분		역 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	-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지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대면, 비대면)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 방향 설정,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인권강사양성(필요시)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보수교육 협력운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인터넷 교육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시 계획 제출 및 실적 마감

- (실시계획 제출)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교육 실시 계획을 취합하여 교육 수강 대상 관련 협회 및 단체로 홍보 예정으로 익월 교육 계획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공문 제출

- (실적 마감) 매월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을 통해 운영실적 취합 및 현황 파악 진행 예정이므로, 전 월 진행한 교육 등록 및 수료 처리를 매월 '5일' 전까지 마감하도록 함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인권교육 실시계획 제출 및 실적 마감에 대해 매달 말 공문을 통해 요청 예정

라)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폐지 등

○ 인권교육기관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아래 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4항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의3제5항 및 이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4항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4항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고시 제9조제1항제5호)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제외)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 인권교육기관 폐지(고시 제11조)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인권교육 실시

가)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집합·방문 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 인터넷 교육 : 매년 6시간 이상

나) 교육방법

- 집합 교육(대면/비대면):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대면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설한 교육 중 대면하여 진행하는 교육

- 비대면교육 : 개인별·시설(기관) 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2023년까지 적용

- 방문 교육: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인터넷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 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 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집합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을 통해 집합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을 통해 매월 노인 보호전문기관 교육 일정 확인 가능

- 집합교육은 근무하는 시설이 소속된 시·군·구에 개설된 교육으로 신청

* 세부교육일정은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합교육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장 등록이 불가함

* 단, 온라인 플랫폼 사용의 어려움 등 사전 논의 시 현장 등록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집합교육 신청 방법

- ①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 지역선택 후 개선된 교육 확인
- ③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 버튼 클릭
- ④ 신청기관명 및 주소,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등 입력
- ⑤ 교육 당일 신청한 교육일, 교육장소에 참석(서명) 및 수강
 - * 교육 시간 엄수, 이수 인정 시간(4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미이수 처리될 수 있음
- ⑥ 교육 종료 7일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수증 출력
 - *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 → 조회 → 이름클릭 → 설문지작성 및 전송 → 이수증 출력

※ 비대면 집합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 개인별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시

- ①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www.noinedu.or.kr) 접속 후 '비대면 교육' 신청
- ② 교육 신청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ID, 비밀번호 사전 발송
- ③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 입장 및 수강
- ④ 교육생 ID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 중도이탈 또는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는 경우 미수료 처리
 -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 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시

- * 개인별 실시간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설(기관)의 요청 또는 필요 시 가능
- ① 시설(기관) 신청자가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www.noinedu.or.kr) 접속 후 '비대면 교육' 신청
 - (※ 시설(기관)에서 신청이 어려울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명단 취합 후 일괄 등록 가능)
 - ② 시설(기관) 신청자에게 출석인증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이수방법, 교육안내 등)하고, 시설(기관)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교육 준비
 - ③ 시설(기관) 신청자는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 입장 및 수강
 -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 ※ 교육인원 최소 20~50명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인원 변동 가능)
-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③ 교육과정 검색 :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 입력 → 일정확인 후 희망교육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 ~ 3주후 교육신청시 작성한 메일로 송부)

※ 세부교육일정은 3월~4월경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 및 교육계획은 변동 가능

〈방문 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지자체는 노인학대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인권교육(방문) 대상임을 통보

*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해 방문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일정 협의하여 교육 진행

* 세부교육일정은 2023년 3월~4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협회, 기초자치단체에 홍보

- 신청방법 : 전화(043-710-9044)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23년 2월부터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하단의 '노인인권' 클릭→교육과정명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 2023년 노인인권
의무교육 클릭→수강신청 클릭

④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수강내역 확인 후 [확인] 클릭

⑤ 중앙의 [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⑥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 진료율 100%

* 12월초~중순 경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 가급적 상반기내 수료 요망

라) 교육 이수증 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함

-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에서 출력(단체, 개인)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홈페이지(www.edu.kohi.or.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

- (방문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발급

- (인터넷 교육)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중도 이탈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인권교육 강사 양성·관리

가) 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1가지에 해당하고, 인권교육기관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 *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 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
- 노인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법학·사회학 또는 보건학 등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인권교육 강사 양성

- 인권교육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권교육 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인권교육 강사로 인정되며,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로 등록되어 공식적인 인권교육 강사의 역할(집합·방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다)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 인권교육 강사는 인권교육기관의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인권교육 강사가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인권교육기관의 장이 사유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라)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 인권교육 강사는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자격 취득(유지) 후 최근 2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유지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8)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가) 인권교육계획 수립·안내

○ 인권교육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각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매년 1월 초)
- 계획 수립 시(1월 초), 교육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지 예정 시기와 공지방법 등을 기재하여 계획 수립

※ 예시: 교육 장소는 2월경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기재)에 공지할 예정

※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연간 교육 일정표 및 교육 유형(대면/비대면 교육), 교육장소(대면 집합 교육의 경우), 기타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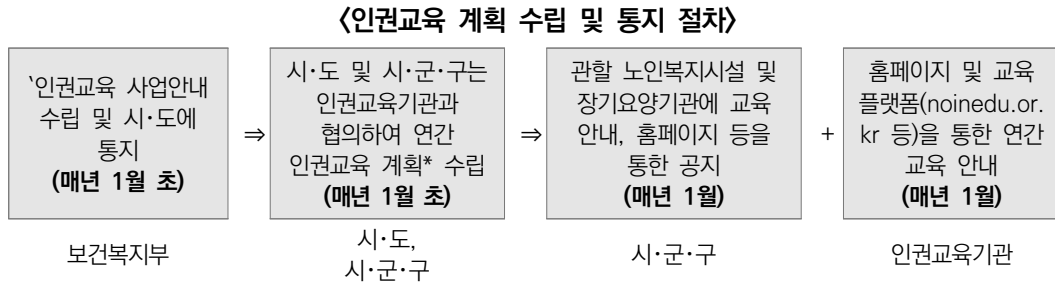
○ 인권교육계획 안내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인권교육 사업안내와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매년 1월까지)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인권교육계획 변경

-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하고 인권교육 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게시하며,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재안내하여야 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집합(대면)·방문 교육**의 경우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집합교육 진행 시 **교육장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안내 및 부착** 등의 조치 선행 필요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일정 등은 지역마다 각기 달라질 수 있음.

나)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3월 10일 까지 2023년 실적 제출

○ 제출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단, 당해연도 12월 중 입사자의 경우(12.1~)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 할 수 있음(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예시) 2023.12.1. 입사자 → 2023년 교육 대상자 제외(2024년 교육대상자)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익년도 추가 연장(2월까지) 실적 인정 폐지(2022년 실적부터 적용)

○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시설 담당부서) → 시·도(노인보호 사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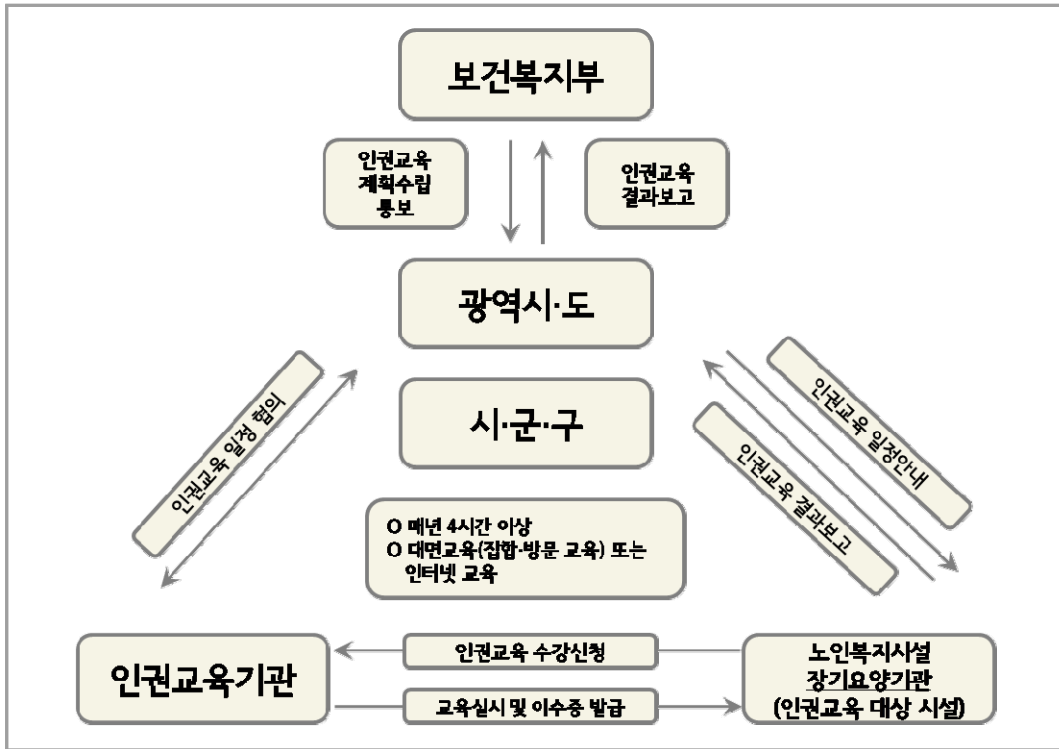
○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부록 11]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 시: [부록 12]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다)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
 -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 ※ 집합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음

(9)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는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 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음

-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선출을 통해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음

○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 의결사항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10) 지자체 역할

○ 시·도(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군·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 수립 및 시·군·구에 통지
-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실시 모니터링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설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 수립
-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비교〉

구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교육대상자	1. 노인복지시설, 2. 요양병원, 3. 종합병원, 4.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	연 1시간 이상	집합 및 방문교육 : 연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 연6시간 이상
교육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 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항
교육기관	지정된 교육기관 별도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방법	기관 자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집합교육(방문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자체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noinboho.or.kr) 또는 https://15771389.or.kr/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집합교육: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Q&A

[노인학대 예방 교육]

Q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A1. 기관장 등 기관의 책임자 분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 또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과 달리 교육기관이나 강사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Q2.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인가요?

A2. 네,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포함되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Q3. 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을 또 받아야 하나요?

A3.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4시간 이상)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Q4.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이 포함되어 이수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4. 네, 인정됩니다.

Q5. 의원급 의료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적 제출 대상기관인가요?

A5.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적 제출 대상입니다.

[인권교육]

Q1.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관, ④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등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는 시설 설치신고필증(증명서)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도 인정되나요?

A3.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Q4.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

A4. 인터넷 교육 및 집합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 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 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기관별로 교육 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대면 교육을 2시간(1시간 혹은 3시간)을 이수한 후에 부족한 시간을 인터넷 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나요?

A5. 현 시스템에서는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가 불가하므로,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퇴사하여 해당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권교육 실시 결과는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소속된 종사자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권교육의 경우 보다 넓은 개념인 ‘인권’에 대해 다루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Q8.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A8.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1시간)을 분기마다(4회) 이수한 경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과 다르므로,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10. 협회 등 보수교육과 동시에 인정 가능한가요?

A10. 불가합니다.

Q11. 인권교육 수료 후 수료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11.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수료증을 일괄 취합 후 보관하다가 지자체에서 실적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0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홍보사업

0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홍보사업

가. 홍보사업의 목적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및 부양가족, 일반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개념과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해 향상
- 노인학대 실태 및 심각성에 관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 확산 및 노인 차별 해소 도모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담의뢰자, 협력기관간의 상호 이해 및 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도움
- 노인보호전문사업을 위한 자원개발 및 기금을 조성

나. 홍보사업의 유형

1) 방법

(1)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TV, 라디오, 유선방송의 노인학대 관련 뉴스, 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또는 신문의 노인학대 관련 보도기사, 기획기사, 인터뷰 기사, 설문 및 통계자료 등 지원
- 신문과 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홍보 실시
- 잡지, 생활정보지, 관련기관의 정기 간행물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번호 홍보 실시

(2) 인터넷을 통한 홍보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타 사이트(포털사이트 포함)와 연계를 통한 홍보 실시
 - 배너 혹은 링크 포함
-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방명록을 통한 홍보 실시
 - 노인학대 관련 글 또는 직접 활동 행사 안내
-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방법
 - 노인학대 관련 신문기사 링크, 보도자료 링크, 노인보호전문기관 행사 등
 - 소셜네트워크 내 기관 홈페이지 연동 및 QR코드 생성 등

(3) 문자광고를 통한 홍보

- 방송자막을 통한 홍보 실시
- 지하철, 시내버스, 열차 등 전광판을 통한 홍보 실시

(4) 설치물을 통한 홍보

- 옥외설치물을 통한 홍보 실시
 - 현수막, 에어아치 등

(5) 직접활동을 통한 홍보

- 캠페인, 사진전, 가두행진,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사회저명인사, 연예인 또는 노인관련 방송프로그램 관련자 등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함

- 이동상담은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여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발굴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자원봉사자 또는 지킴이단을 활용한 관련기관 방문 또는 거리홍보 활동을 실시함

2) 기관의 역할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노인학대와 관련된 시사문제 또는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
- 방송과 신문을 통한 공익광고
- 방송매체를 통한 스포츠광고
- 노인학대예방 홍보용 영상 제작·배포
- 기업체와 연계한 홍보
- 홍보대사 섭외 및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 활동
- 홍보 수요처 개발 및 협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노인학대와 관련된 시사문제 또는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
-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 관련기관 방문홍보 및 특별행사 실시와 기관 연계를 통한 홍보 캠페인 진행
- 다양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등) 제작 및 배포

3) 홍보사업의 평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홍보 실시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홍보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평가 내용 및 방법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적으로 개발함
- 사업평가 결과로 도출된 현황 및 문제점에 근거하여 모색된 향후 대안과 사업방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의견 제시될 수 있음

4) 홍보사업 보고서 작성방법

구분		종류	세부기준내용	
언론 매체	보도 (기사 화)	전국신문		보도된 횟수 기재
		지역신문		
		중앙 TV	예) MBC, KBS, EBS 등	
		지역 TV	예) 울산MBC, CJB청주방송 등	
		케이블	시사 프로그램 등에 보도	
		라디오	중앙과 지역 구분 없이 라디오 프로그램	
		잡지	시사 잡지 종류(예) 신동아, 시사저널 등)	
		인터넷	인터넷 언론사(예) 오마이뉴스, 브레이크뉴스 등)	
		기타	무가지, 사업관련신문, 종교신문, 타기관지, 생활정보지 등	
	소계			
	홍보	전국신문	공동캠페인, 정보게시판 등	1일 1회
		지역신문		
		중앙 TV		
		지역 TV		
		케이블	공동캠페인, 정보게시판, 1분 캠페인 등	월 1회
		라디오		
		잡지	공동캠페인, 광고 등	월 1회
		인터넷	배너, 링크, SNS 등	월 1회
		기타		
	소계			
합계				

구분		종류	세부기준내용	
직접 홍보	문자 홍보	대중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내 전광판 및 부착물	대당 월1회
		설치물	역사, 터미널 내 전광판, 거리전광판	1일 1회
		소계		
	옥외 홍보	현수막	기관안내 및 전화번호 현수막(행사홍보현수막 비포함)	월 1회
		입간판	기관안내 및 전화번호안내 설치물(에어아치 비포함)	월 1회
		소계		
	직접 활동	캠페인	사진전, 효(孝)서약 등	중복표시 주의 (2회 이상의 행사진행 시 대표행사만 표기)
		학술행사	세미나, 포럼, 워크샵, 케이스 컨퍼런스 등	
		이동상담	캠페인, 의료상담 등과 연계는 가능하지만 2개 이상의 행사가 진행 시 중복 표시 안됨	
		특별행사	연극제, 후원의 밤 등	
		방문홍보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등	
		기타		
		소계		
총계				
홍보물 (단위 : 매)		리플렛		배포한 수량 기재
		전단지		
		스티커		
		포스터		
		홍보명함		
		홍보물품		
		인쇄책자		
		기타		
		소계		

① 기본사항

○ 실적의 중복기재 방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력을 최대한 반영한 실적 취합

○ 작성요령

- 횟수 중심 (비고란을 통해 일시, 장소, 내용기재)
- 실적 증빙자료에 대한 구비(공문 및 계약기간 명시자료, 사진자료 등 근거자료 보관)

○ 용어정리

- 보도(기사화) : 행사 및 사업실적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시 기사화 된 건수
- 홍보 : 유·무료에 상관없이 기관 및 사업(행사포함) 등에 관한 광고의 건수

② 세부사항

○ 실적 중복체크 방지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재능나눔활동 포함) 어르신들의 사업 실적은 “지킴이단 활동 실적”내 표기. 홍보실적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순수한 활동실적만 표기
- 교육을 목적으로 기관을 방문하고 그 기관에서 사진전시 등으로 기관을 홍보하였다고 하여 이중으로 실적을 표기하지 않음
-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 자체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배포를 통해 기사화 된 건수는 실적으로 표기
- 캠페인과 이동상담 등 2개 이상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주요행사만 1회 표기
 - ※ 캠페인은 기관에서 사진, 설문지, 서약서 등을 가지고 지역 거리, 행사장, 축제장에서 진행된 것
 - ※ 이동상담은 거점을 두고 아웃리치 상담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
- 동일행사를 2일간 진행 할 경우 2회로 표기(특별행사도 동일하게 표기)
- 언론매체의 경우 1일 1회(재방송은 포함하지 않고 본방만 표기)
- 같은 내용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만큼 표기(같은 내용이 MBC, KBS 각기 다른 채널에서 나올 경우/아침방송, 저녁방송에서 각각 방송될 경우 2회로 표기)
- 케이블방송의 정보게시판, 줄자막, 공동캠페인의 경우 1일 1회로 표기
- 중앙에서 지원하는 카툰사진전시회는 특별행사로 표기
- 케이스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은 학술행사로 표기
- 인터넷 배너 링크는 월 1회, 게시판에 행사홍보 글 작성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회원 대상 행사 및 기관소개 메일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 인터넷 홍보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개인블로그, 싸이월드 등 제외) 홈페이지에 해당
 - ※ “뉴스레터” 배포실적 포함
 - ※ SNS 각 계정마다 월 1회로 간주함
 - ※ SNS 상의 홍보글 링크, 뉴스레터 등은 월 1회로 하되 내용이 다를 경우 2회 이상 가능
 - ※ SNS 상의 홍보글 및 뉴스레터를 타 기관 및 개인이 공유(ex. 태그 등)한 것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문자홍보의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 지하철 대수 당 월 1회
(30대의 버스에 1달 동안 홍보한 경우 30회)
 - ※ 30대 버스를 40일 했을 경우 $(30\text{대} \times 40\text{일}) / 30\text{일} = 40\text{회}$
 - ※ 30대 버스를 10일 했을 경우 $(30\text{대} \times 10\text{일}) / 30\text{일} = 10\text{회}$
 - 문자홍보의 설치물(역사, 터미널, 야외 전광판 등)은 일 1회
(3곳의 전광판에 1일 동안 홍보될 경우 3회)
 - 문자홍보에서 핸드폰 홍보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옥외홍보의 현수막은 행사홍보는 포함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기관 및 신고전화번호 홍보 현수막만을 실적에 포함(월 1회)
 - 옥외홍보의 입간판은 월 1회로 표기
 - 옥외홍보의 입간판에서 에어아치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방문홍보의 경우 순수하게 상담원들이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기관(기업체, 시설, 학교 등)방문한 실적을 표기
 - 방문홍보의 경우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의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홍보물품은 상기 홍보양식(표) 이외 포스트잇, 밴드, 볼펜, 물티슈, 홍보 풍선 등
 - 인쇄책자는 낱장이 아닌 책자형태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서 등
 - 매월 실시한 홍보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월별작성 기한 내 작성완료
 - 홍보물(영상, 음향 포함) 제작·배포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



05

전산시스템 업무지침



05 전산시스템 업무지침

가. 전산시스템 관리

1) 목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사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조치결과 및 사례종결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료의 기록·보관·삭제 및 정보검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며 각종 현황통계를 출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2) 전산시스템의 관리

(1) 정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은 노인학대의심사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례관리 자료를 전산화하여 기관별 각종 현황통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함
- ‘전산시스템 운영’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전산처리하고 사업 실적보고서, 사례현황보고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가공 관리하여 각종 현황통계를 출력하는 것을 말함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기본 운영지침

-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토록 함
- 매년 1회 이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 발간해야 함

- 관장은 정책수립 및 연구 목적을 위하여 특정직원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데이터 열람기록부에 등재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처리하도록 함
- 개인상담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함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기본 운영지침

- 매월 5일까지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업무실적을 전송하고, 이때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검토하고 입력함
- 기관별로 1인 이상 실적보고 담당자를 두어 입력 내용 및 누락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국실적을 통합하여 마감한 후 기관의 실적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선으로 마감 해제 요청을 하여 수정 처리함
- 투명한 전산시스템 접속권한관리를 위하여 재직 및 퇴직, ID부여 권한을 가진 기관관리자는 최대 2명으로 제한함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각 개인별로 ID를 부여 받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퇴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과 동시에 접속금지조치를 취해야함. 접속금지 조치는 단순히 ID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ID를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 상담원의 입사 및 퇴사 등으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3일 이내에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전산시스템 상에서도 동일 기간 내에 퇴사 처리를 해야 함
- 정보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등)는 가능한 지정된 공간(사무실)에서만 사용하고, 출력자료 및 전산기기 등을 특별히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 기록매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업무

○ 노인보호사업 이외 이용 및 제공금지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모든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 보호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금지함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당해 노인학대 사례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당해 노인학대 사례와 관련된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노인복지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근거가 있는 경우
 - ※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금지

○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할 때 유의 사항

-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 요청목적에 따른 제공항목의 적정성
- 적절한 보안대책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정보를 이용할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용목적·이용방법 등을 제한 하거나 정보제공 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타 기관 제공금지 및 이용기간 종료 후 개인정보의 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 관련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함

- 제공받는 기관이나 개인의 명칭
- 이용목적
-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제공하는 정보 항목

- 제공방법
- 제공일자 및 정보이용기간
- 수령자에 대해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노인보호기관의 상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활용하도록 함

(5) 개인정보 취급의 책임

○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취급자의 책임

- 첫째,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의 책임을 가짐
- 둘째,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 등의 입력 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전산시스템 운영자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게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셋째, 개인정보 처리를 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나. 전산시스템 사용 시 기본사항

1) 사용자 인증 및 권한

(1) 사용자 인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최초 사용 시에는 사용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개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함

※ 사용자 승인 요청은 각 기관관리자 혹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함.

※ 시스템 사용 시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함

(2) 사용자에게 따른 권한 부여

○ 전체관리자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자는 모든 기관관리자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함

○ 기관관리자

- 각 기관의 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사용자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함
- 기관관리자는 각 기관의 2명의 대표 관리자만이 “시설관리” 메뉴를 사용할 수 있음

○ 상담원

- 각 개인별 ID를 부여 받아 시스템 사용
- 보고권한은 보고 담당자로 지정된 상담원만이 가능

(3) 권한설정

- 권한설정관련 메뉴는 기관 관리자만 가능하며 로그인 후 시설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남

-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권한설정

TIP

※ 항목에 따른 권한부여 가능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위 그림의 ③번에 체크여부에 따라 권한부여 가능

ALL	C	R	U	D	P	E
모든 권한	신규 등록	조회	수정	삭제	출력 (종이)	출력 (엑셀)

절차 : 시스템관리 ⇒ 사용자권한관리 ⇒ 조회 ⇒ 사용자명 선택 ⇒ 권한설정

(4) 전산시스템 사용 퇴사자 퇴직처리

○ 퇴직처리는 퇴사한 상담원의 ID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ID를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 퇴직처리는 관리자만 할 수 있음

* 시스템관리 → 사용자 승인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조회 → 승인상태(승인) → 재직여부 퇴직 (체크 및 날짜 선택) → 저장

- 퇴사자는 공식적인 퇴사일로부터 3일 이내 퇴사 처리해야함

* 퇴직처리는 시스템 작성일 기준 값으로 고정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5) 전산시스템 오류발생시

- 전산시스템 오류발생 시 ‘취약노인보호지원시스템’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오류사항 건에 대한 ‘전산업무지원요청서[부록 14]’를 작성하여 게시한 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유선 연락

* 업무게시판 → 질의응답 → 전산업무지원요청서 작성 및 게시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유선 연락

다. 실적 검토 방법

1) 실적검토 내용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검토 항목	① 사업실적/사례현황보고서 수치 확인	① 쉼터보고서/쉼터서비스보고서 수치 확인
	② 연령 확인	② 중복사례 확인
	③ 중복사례 확인	③ 우울증 및 자아존중감 척도확인
	④ 접수일자 기준 확인	④ 쉼터 퇴소 처리 여부 확인
	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구분	⑤ 식사/서비스/상담 입력 확인
	⑥ 일상생활수행정도 확인	⑥ 면회/외출외박 입력 확인
	⑦ 건강상태 확인	⑦ 프로그램 일지 입력 확인
	⑧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확인	⑧ 검토사항 3,4 확인 등
	⑨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항목 확인	
	⑩ 학대시설정보 입력 확인	
	⑪ 접수판정/사례판정 일치 여부	
	⑫ 서비스/상담/사례회의록 입력 확인	
	⑬ 처벌 및 최종조치 입력 확인	
	⑭ 교육 및 홍보실적 확인	
	⑮ 보고서 집계 마감 확인	
	⑮ 검토사항 1,2 확인 등	

2) 실적 입력 시 유의사항

(1) 노인보호전문기관

○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례현황보고서

- 각 항목간의 소계, 월계, 누계, 동일항목에 대한 통계수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연령 확인

- 노인복지법 개정(2017.6.3.)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 필히 확인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연령(수기입력) 및 연령대(콤보박스) 일치 여부 확인

○ 학대피해노인 중복 사례 확인

- 신고자가 각기 다르더라도 학대피해노인이 동일인인 경우 1건으로 정리(최초 신고자를 기준으로 작성)

○ 접수일자 기준 작성 확인

- 상담 및 서비스, 현장조사 등 일자를 등록해야 하는 모든 보고서는 접수일보다 과거로 등록할 경우 사업실적/사례현황보고서 및 통계 추출이 불가하오니, 날짜 입력 시 주의 바람.

○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구분

- 신고자유형 및 학대발생장소 입력 시 시설 종류 필히 확인하여 등록 바람.

※ 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참고 바람.

○ 일상생활 수행정도 항목 22개 등록 여부 확인

- 중복 입력되거나, 일부 누락되는 항목이 발생하므로 월 마감 시 필히 확인 바람.

○ 건강 상태 확인

- 주관적 건강 상태, 치매 상태 값은 필히 입력 바람.

○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 일치 여부 확인

- 예시) 실제 행위자는 배우자이나, 아들로 등록한 경우 등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관련 내용 입력 확인

-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20.12.29.)에 따라 21년 6월 30일부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제공 보호자가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었으므로, [학대행위자 대응 상담 교육 가이드북 및 워크북]을 참고하시어 필히 입력 바람.

○ 학대시설 정보 입력 확인

-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로 등록된 사례는 행위자 탭에서 [학대시설 정보] 필히 입력 바람.

○ 서비스 입력 확인

- 컴퓨터로 이관한 사례를 삭제할 경우 컴퓨터 실적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사례 삭제 전 필히 확인 바람.

○ 상담일지 입력 확인

- (상담일지) 학대사례이나 상담구분 값을 “접수 및 종결상담”으로 체크할 경우 사례현황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음

※ [접수 및 종결상담]은 일반사례일 때 입력 가능함

○ 사례회의록 입력 확인

-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 다수 확인되므로, 필히 입력 바람.

* 일부 사례에서 참석자만 등록하고, 회의 개요 내용을 등록하지 않았음

○ 처벌 및 최종조치 입력 확인

-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로 등록된 사례는 행위자 탭에서 [학대시설 정보] 필히 입력 바람.

○ 교육 및 홍보실적 입력 확인

- (교육실적) 실적 입력시 횟수, 인원수, 교육기관명, 교육명, 교육일자 및 시간 필히 입력 바람.

○ 보고서 집계 마감 확인

- 월말 마감 시 사업실적/사례현황 보고서를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집계 바람

※ 순차적으로 집계하지 않을 경우 누계 수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

(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쉼터보고서 및 쉼터서비스보고서

- 각 항목간의 소계, 월계, 누계, 동일항목에 대한 통계수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이용자 및 입소자 중복 사례 확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쉼터 이관을 중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퇴소 목록 수시 확인 필요

○ 우울증 및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실시 여부 확인

- 쉼터 퇴소 시, 우울증 검사 및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실시 후* 퇴소 처리

* 건강 상태 악화, 심신 미약 상태, 치매 등의 이유로 척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말 실적 마감 시 미 실시 사유를 보고해야 함

* 매년 연초에 보호노인에 대한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 및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결과]를 사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해야 함

○ 쉼터 퇴소 처리 여부 확인

- 쉼터 퇴소 시, 입퇴소 처리 항목과 퇴소일자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해당 값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규쉼터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음

- 쉼터 퇴소 시, 일지관리에서 입소자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람.

○ 식사/서비스/상담 입력 확인

○ 면회/외출외박 입력 확인

○ 프로그램 일지 입력 확인

3) 실적 검토사항

■ 검토사항 1(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구분		총 건수가 동일해야 하는 Data
사례현황 보고서	피해자 현황 中	성별 = 연령 = 학대행위자 동거여부 = 결혼상태 = 가구형태 = 교육수준 = 생활상태 = 직업상태 =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세부 항목 = 주거형태 = 주관적건강상태 = 치매상태 = 발생장소 = 종교 = 복지대상자
	학대행위자 현황 中	성별 = 연령 = 유형 = 교육수준 = 결혼상태 = 직업상태 = 생활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치매상태
사업실적 보고서	신고접수(건) 中	학대사례건수 = 사례판정 건수 = 신고자유형 ※ 사례판정 입력 필수 (사례판정 미등록 사례는 모든 통계에서 집계 되지 않음)
사업실적 보고서	학대행위자 현황 中	본인(피해자) 수 =
	학대유형(건) 中	= 자기방임 수
사업실적 보고서	상담건수(회) 中	학대상담 합계 =
사례현황보고서		= 학대상담구분 합계
사업실적보고서		사례판정(건) 건수 =
사례현황보고서		= 사례접수경로 건수 = 피해자 수
사업실적보고서		사례판정(건) =
사례현황보고서		= 피해자수 = 학대발생빈도 = 학대지속기간 = 학대발생장소

※ 학대사례의 경우 사례판정이 미입력일 때 수치가 집계되지 않아 위 항목 간 Data 불일치

■ 검토사항 2(노인보호전문기관실적 파악안됨이 없어야 하는 항목)

구분(탭)	항목
피해자	(공통) 현거주지, 발생장소, 연락처, 피해자 성별, 연령 및 연령대, 행위자 동거여부, 생활상태, 직업상태,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상태, 스크리닝, 학대발생장소, 복지대상자 구분, 종교, 일상생활 수행정도 (재학대) 연령 및 연령대, 행위자 동거여부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 및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상태, 결혼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현장조사	현장조사, 학대유형 및 정도, 발생빈도, 지속기간, 학대피해 강도, 학대 발생원인
사례판정	담당자, 사례판정일, 신고내용, 사례판정 결과, 협조사항
서비스등록	피해자 욕구, 학대행위자 욕구, 기타주변인 욕구
관련정보 및 자원	주거형태, 주거환경, 생태도, 가계도
종결	종결지표, 종결사항지표, 종합의견 (학대피해노인) 처벌 및 최종조치, 종결여부, 종결일, 종결사유 1순위 (학대행위자) 처벌 및 최종조치

■ 검토사항 3(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실적)

구분			총 건수가 동일해야 하는 Data
신규 쉼터 보고서	입소자	입소자	치매여부=연령현황=결혼유형=가구형태=주거형태
		퇴소자	퇴소사유=퇴소 후 거주현황=우울증검사
	이용자	입소자	치매여부=연령현황=결혼유형=가구형태=주거형태
		퇴소자	퇴소사유=퇴소 후 거주현황=우울증검사

○ 기타

- 입퇴소 수치 일치여부 확인
- 퇴소 처리할 경우 퇴소일자 및 입퇴소처리 항목 입력 확인
- 각 항목별, 월별 누계 수치 확인
- 누락된 항목 파악
 - 입력 값이 “0”인 항목의 누락여부 확인

■ 검토사항 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척도검사)

구분		해석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	사전 < 사후	우울한 상태 ↑
	사전 > 사후	우울한 상태 ↓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

- 건강상태 악화, 심신미약상태, 치매 등의 이유로 척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말 실적 마감 시 미실시 사유를 보고해야 함



06

협력체계 구축사업

06 협력체계 구축사업

가.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1) 행정기관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시설학대 행정처분 결과를 광역 시도로부터 받아 취합(요양보험운영과)

(2) 시·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분관 설치 지원
- 시·도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공모 신청서에 지도점검, 인권침해(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처분 및 지적받은 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위탁 심사평가 점수에 반영
- 시·도 지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시·도 지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상 노인 학대 신고·접수 시 시·도의 조치사항

- 시·도는 현장조사 동행 및 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도록 조치하여 조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
- ①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시·도 노인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은 시·군·구 시설 담당 공무원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하고,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함
- ②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사·판정하도록 하며, 사례를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감독
- ③ 기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자에게 학대의심시설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였는지 확인

- 시설 내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시·군·구→광역시·도→보건복지부)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등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구축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 노인의 퇴소 이후 입소 가능한 양로시설을 지정하거나 운영

(3)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노인, 학대피해노인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연락처 제공 등 신분조회 관련 제반업무 협조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노인복지법」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

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신분조회 필요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학대행위자·학대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바,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치료 등 개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족의 인적사항 파악은 필수적 사항임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부록13]상담사실 확인서, [기타서식5]쉼터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시 적극 협조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등에 의거하여 고발하여야 함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 조치 실시(시설입소, 비용지원 등)

■ 학대피해노인 시설보호 조치

- 지방자치단체 : 노인학대사태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보호시설 2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각1개소) 이상 지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입소의뢰서, 판정결과를 첨부하여 보호시설 제출
- 보호시설 : 입소 조치 및 보호
 - 시·군·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긴급지원 하여야 함5
 - ※ 긴급분리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 조치 실시(시설입소, 비용지원 등)

■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거부 및 사후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위반사실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법 위반(제39조의16(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제2항 위반자,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 관리 등) 제5항 위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금액 산정 및 감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제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함(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 *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이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관할 지역내에서 노인학대 신고·접수된 시설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조치사항

- 시·군·구는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
 - ①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시·도 노인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 ②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사례를 이관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 ③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에 행정조치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학대피해노인 전원조치 지원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추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 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함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 14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함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노인학대 발생 시 사례연계 및 지원
 - 자기방임 사례 등 노인학대사례 개입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설치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협력
 - 노인학대 사례접수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사례관리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이 보유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제공
 - 노인보호전문사업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지원 및 협조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는 주민센터에 노인보호전문사업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토록 함
 - 시·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수행 표시판 발급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주·정차 시 협조하도록 함
 - 경찰관서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의무자의 의무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 폐쇄요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 *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 범죄경력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 노인의 퇴소 이후 입소 가능한 양로시설을 지정하거나 운영

(4)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는 관할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담당자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동행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및 제39조의7(응급조치 의무 등)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해야 함

2) 경찰관서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지원 협조
-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등
- 경찰관서는 관계행정기관 및 노인관련기관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경우 노인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1서식])
- 경찰관서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부록 7]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실 통보

3) 119 구급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9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응급조치를 요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

4) 국민건강보험공단

- 학대피해 응급사례 노인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신속한 장기요양 등급판정
- 학대피해 노인의 시급한 시설입소(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반영 협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학대관련 조사 및 증빙자료 요청 시 적극적 협조
- 임직원들의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행정 업무 협조

5) 의료기관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게 대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피해 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권장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연 1회 이상 의료기관 내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 의료기관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담당자 등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 의무 등)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시, 해당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6)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 노인학대의심사례 조기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시설 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 시 신속한 보호, 우선 입소 보호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 입소의뢰에 대한 보호 실시 여부를 추후 시설평가에 반영
- 연 1회 이상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노인관련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 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7)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학대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3의2, 제39조의19제2항2의2에 의거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법률 지원 요청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 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시 협조

■ 노인학대 관련 사건 상담·교육 등의 제공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중 피해자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학대’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음.
2. 노인학대 관련 사건 상담 수탁 기관 지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 가정보호사건 중 ‘노인학대’ 관련 사건(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권고
3. 노인학대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의 제공 적극 활용
 - 가정보호사건 8호 처분(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 * 가정폭력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상담명령 병과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 학대행위자로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보호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삭제
-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노인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상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받을 경우, 관련 조서에 상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상담원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 상담원의 법정 출석 시 학대행위자의 협박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 검사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적극협조
- 상담원의 법정 신문 시에도 학대행위자와의 대면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외 제3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거나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면 적극협조(형사소송법 제165조 및 제165조의2)
- 학대행위자가 공판조서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경우, 상담원의 인적 사항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의 개인정보는 열람·등사 가능 범위에서 제한함(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4)

8) 신고의무자 직군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 및 협회 등은 중앙 및 지역신고의무자 협의회에 적극 참여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내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 및 협회 등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등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 및 보수교육 시 노인학대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07

부 록



[부록 1] 교육 실적 보고서

교육 실적 보고서

(20 년 월)

▶ 기관명 : () 노인보호전문기관

구분			회	누계	명	누계	비고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대상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소계						
비신고 의무자	일반인	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중·장년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	관공서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기타관련기관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소계						
총 계							

[부록 2] 홍보 실적 보고서

홍보 실적 보고서

(20 년 월)

▶ 기관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단위 : 회)

구분		종류	세부기준내용	
언론매체	보도 (기사화)	전국신문		보도된 횟수 기재
		지역신문		
		중앙 TV	예)MBC, KBS, EBS 등	
		지역 TV	예)울산MBC, CJB청주방송 등	
		케이블	시사 프로그램 등에 보도	
		라디오	중앙과 지역 구분 없이 라디오 프로그램	
		잡지	시사 잡지 종류(예) 신동아, 시사저널 등)	
		인터넷	인터넷 언론사(예) 오마이뉴스, 브레이크뉴스 등)	
		기타	무가지, 사업관련신문, 종교신문, 타기관지, 생활정보지 등	
		소계		
	홍보	전국신문	공동캠페인, 정보게시판 등	1일 1회
		지역신문		
		중앙 TV		
		지역 TV		
		케이블	공동캠페인, 정보게시판, 1분 캠페인 등	월 1회
		라디오		
		잡지	공동캠페인, 광고 등	월 1회
		인터넷	배너, 링크 등	월 1회
		기타		
		소계		
	합계			
직접홍보	문자홍보	대중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내 전광판 및 부착물	대당 월1회
		설치물	역사, 터미널 내 전광판거리전광판	1일 1회
		소계		
	옥외홍보	현수막	기관안내 및 전화번호 현수막(행사홍보현수막 비포함)	월 1회
		입간판	기관안내 및 전화번호안내 설치물(에어아치 비포함)	월 1회
		소계		

구분		종류	세부기준내용	
	직접 활동	캠페인	사진전, 효서약 등	중복표시 주의 (2회 이상의 행사진행 시 대표행사만 표기)
		학술행사	세미나, 포럼, 워크샵, 케이스컨퍼런스 등	
		이동상담	캠페인, 의료상담 등과 연계는 가능하지만 2개 이상의 행사가 진행 시 중복 표시 안됨	
		특별행사	연극제, 후원의 밤 등	
		방문홍보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등	
		기타		
		소계		
총계				
홍보물 (단위 : 매)	리플렛		배포한 수량 기재	
	전단지			
	스티커			
	포스터			
	홍보명함			
	홍보물품			
	인쇄책자			
	기타			
	소계			

[부록 3] 전산시스템 등록사례 열람기록부

전산시스템 등록사례 열람기록부

번호	날짜	시·분 - 시·분	열람자	열람 목적 및 열람내용	담당자 확인

[부록 4] 인력현황보고

인력현황보고(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 기관명 :

연번	구분	직명(급)	성명	담당업무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퇴사일	자격	연락처(핸드폰)	E-mail	비고
	재직/휴직											

※ 인력변동으로 인해 인력현황보고 제출 시에는 현재 시점의 입·퇴사자를 모두 기록함.

※ 행 추가는 가능하나 기타 항목추가 및 편집은 불가능 함.

※ 기존 보고 시 활용하던 인력현황보고 양식과 동일함.

[부록 5] 신분조회 요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7서식] <신설 2016. 12. 30.>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경유)
제목 신분조회 요청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합니다.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서류	서식			
적용사유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신청인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붙임 신분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끝.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신분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인 동의 불가 사유	예시) 소재지 불명, 연락 두절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에 따른 노인학대 사례개입(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에 필요한 신분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본인 동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www.noinboho.org | 131

[부록 7]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관할 행정기관의 장
(경유)
제목 **의무위반사실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주 소			
의무위반 사실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내 용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끝.

○○경찰관서장(○○노인보호전문기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부록 8] 노인학대 현장 동행요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 <신설 2016. 12. 30.>

○○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노인보호전문기관장(○○경찰관서장)
(경유)

제목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사항	신고시각	년 월 일 시 분		
	신고요지			
	범죄발생지			
동행요청인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특이 사항				

끝.

○○경찰관서장(○○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부록 9]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시간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 교육 등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부록 11]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설·기관→시·군·구]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여부 (이수 또는 미이수)	교육방법	교육기관 (1.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보호전문기관, 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홍길동	이수	집합교육	1
	경기도	이천	방문목욕	00재가장기요양 기관	심 청	이수	인터넷	3

[illegible]

[부록 13]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상담내용				
상담기간	20 . .부터 20 .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인)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부록 14]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전산 업무지원 요청서

전산 업무지원 요청서		
요 청 사 항	요청건	
	요청기관	
	요청자 (전화번호)	
요청 범주	☐ 기능개선 ☒ 오류수정 ☐ 통계 및 데이터 추출 ☐ 게시물 게재 ☐ 현황조사 ☐ 기타	
요청 사유	※ 통계 및 데이터 요청시 반드시 업무처리 근거 기재 예) 복지부 요청문서, 메일, 상위기관 담당자 명시	
요청 상세 내역	* 내용을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경로 : ○ 내용 :	
첨부사진 (오류 캡처사진)		

[부록 15]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앞쪽)

제 호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보 건 복 지 부 시·도 시·군·구

60mm×90mm[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조사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및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참고자료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주요내용	조항	시행일
비밀누설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 법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하여, 운영·관리의 책임을 묻도록 함	제60조	2020. 7. 8.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업무 추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시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가 추가됨	제39조의5	2021. 6. 30.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노인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함	제39조의16	2021. 6. 30.
법률적 자문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업무 추가 *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센터의 업무에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가 추가됨	제39조의19	2021. 6. 30.
법률적 자문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업무 추가 *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제61조의2	2021.6.3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 * 다만, 노인학대 신고의무 해태한 자에 대한 벌칙과 관련하여 제39조의6 제2항을 따른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함	제39조의6	2022.3.22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양벌규정) ----- ----- ----- -----제55조의4제1호의2·제3호----- ----- ----- ----- ----- ----- ----- -----.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신 설〉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 2. ----- 3. -----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 5. ----- 6. ----- 7. ----- 8. ----- 9. -----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 설〉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 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 4. ----- 5. -----
제61조의2(과태료) 〈신설〉	제61조의2(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삭제 <2012. 10. 22.> ⑥ 삭제 <2012. 10. 22.>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 15.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 15. (현행과 같음)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2(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61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u>다만, 제39조의6제2항 제16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u>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PART

0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1장 사업개요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3장 입소(이용) 및 퇴소

제4장 기타 행정사항

제5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업 관련 필수·기타 서식



0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나. 설치배경

-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 지정의 양로·요양시설은 전문적인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
- 가족기능 회복 및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다.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일시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라.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쉼터의 업무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입소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및 우울증 자가 검진검사 실시
 - 입소노인의 사망 시 가족 등 부양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 용어정의

- 입소노인 : 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대피해노인
- 이용노인 : 쉼터에 입소하지 않았으나, 학대로 판정되어 심신치유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대피해노인 및 쉼터 퇴소 후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대피해노인
 - ※ 입소노인 및 이용노인의 수는 실인원으로 산정
- 보호노인 : 입소노인과 이용노인의 합
- 보호기간 :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 재 입 소 : 퇴소 후 재학대 발생으로 재입소

02 설치 및 운영

가. 지정 및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
 -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위탁관계 변경 시 기채용 인력 고용 및 퇴직적립금 승계, 관련문서 인계 등 쉼터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쉼터 임대를 위해 투자된 법인 전입금은 전액 반환
 - 쉼터 예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쉼터 지정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쉼터운영 지정기관 변경 가능
 - 지정기관 변경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적 심사 및 평가

나. 시설 기준

- (규모)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 생활 지원을 위해 1실 이상의 1인실 설치를 권장한다.
 - * 타 가족 및 타 노인복지시설 연계 등을 위해 입소한 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 설비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1항 [별표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른다.
- ① 침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합숙용 침실은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
-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② 상담·교육실

-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 상담 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할 것

③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④ 화장실 및 목욕실(샤워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개정 2018. 3. 13.]

-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9.15.]

- 제12조(건축물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 2) 및 나목부터 비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별표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다. 종사자 기준 및 업무내용

- 쉼터의 장(소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이 쉼터 업무 총괄 관리 등을 겸직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2명)
 - 쉼터 입소 및 이용노인에 대한 개입계획 및 사례관리 지원, 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단,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중 1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쉼터의 관리·운영을 겸임·지원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4명)
 - 입소 및 이용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가사 활동,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3항 [별표 14]에 근거
- 쉼터의 야간 근무자
 - 쉼터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 그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 이상이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함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2항 [별표 13]에 근거

라. 운영

- 동일 시·도 내 타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
 - 쉼터운역을 지정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 내 다른 지역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의뢰되는 쉼터 보호노인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쉼터 보호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강화
- 보호노인 건강관리
 -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쉼터의 장은 입소자 및 직원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쉼터의 청결 및 위생관리, 기본방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쉼터의 장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수시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실시
 -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 * 치매검사 및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이 의심될 경우 검사비용 지원 가능
 - ** 간병비 지원불가
 -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 및 질식·경련·화상·식중독 등에 예방·관리방법 등을 숙지하여 사전 예방
- 급식위생
 -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단표를 참고하여 제공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2항 [별표 13]에 근거
 - 전염성질환, 화농성 창상 등을 가진 사람은 노인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됨
 -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 쉼터의 장은 조리실 및 식사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이 식중독 등 부적절한 급식으로 인한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시설의 안전관리

-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 :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 * 1인당 최고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1건당 최고 배상한도액 5억원 이상
 - ** 투척용 소화기 또는 일반 소화기 비치
-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
- 쉼터의 모든 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 및 화재예방 생활원칙 등을 숙지
- 반기별 쉼터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초기대응 및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 업무분장표를 작성, 유사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쉼터에 보호노인 안전을 위한 CCTV설치를 할 수 있음
 - * CCTV 설치 시에는 입소 및 이용자, 보호자 등에게 CCTV 설치 및 이용목적 등을 알려야 함

○ 회계관리

- 쉼터의 재무회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사업비(운영비 포함)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가능
 - 사업비(운영비 포함) 전용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등),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전용 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 ※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과 결산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출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등) 편성 및 집행은 최소한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
-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

마. 관리 및 감독

○ 보건복지부

- 쉼터 관련 정책수립
- 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 시·도

- 쉼터 운영 기관 지정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부칙]제2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경과조치를 해야 함

※ [부칙] 제2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경과 조치('17.9.15 시행)

- 법 시행 당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쉼터로 봄
-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쉼터 운영 업무 위탁을 다시 받아야 함

- 시·도 지정 전용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시·도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관리하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 또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재지'의 제한 없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철저
-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 시·군·구

- 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의 지정 및 보호시설 입소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긴급지원 조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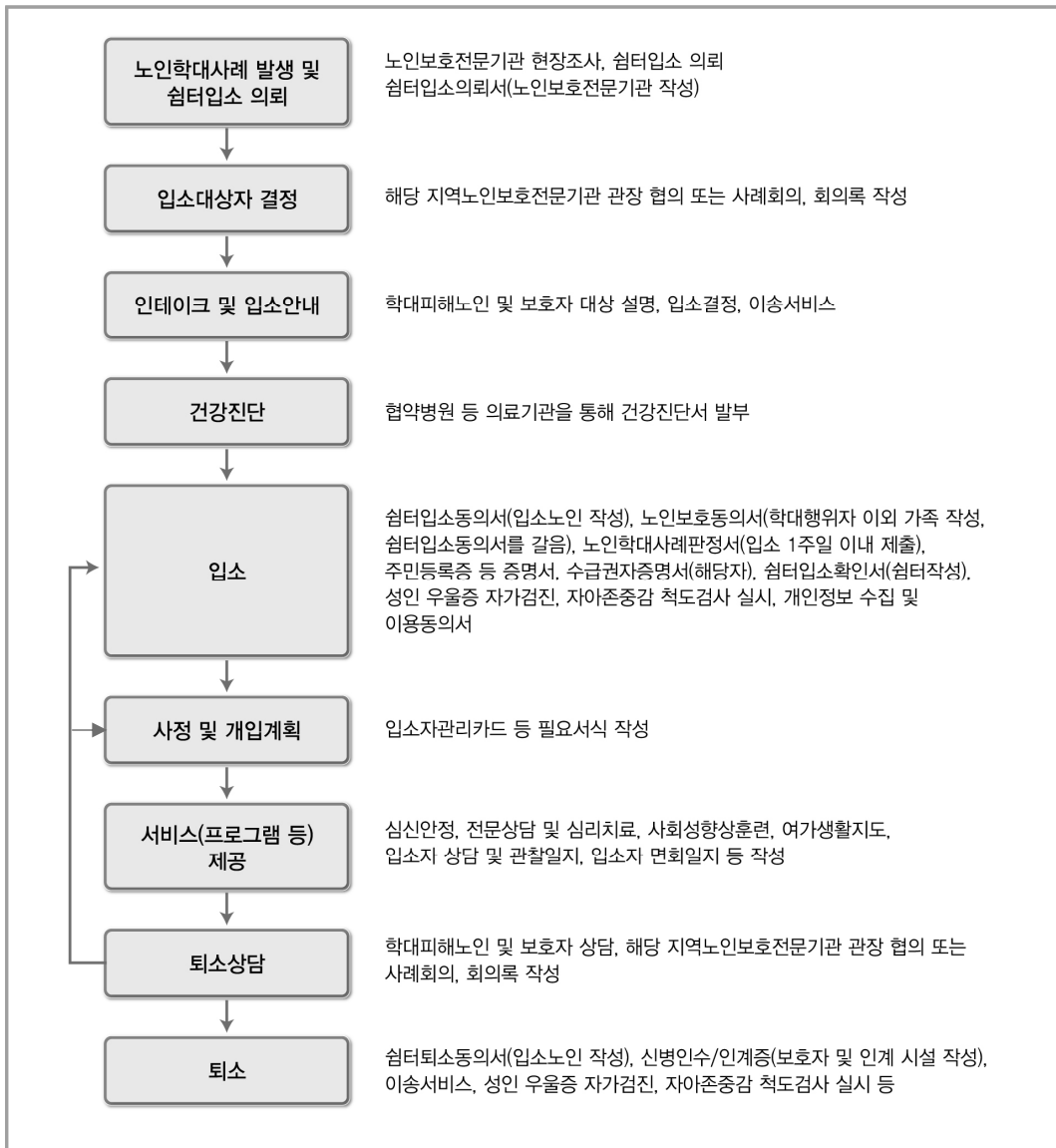
- 쉼터 업무지도 및 지원
- 전국 쉼터 월별 운영실적 보고(전산)
- 쉼터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쉼터 종사자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 쉼터 운영 평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조
- * 시·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쉼터 운영을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은 시·도내 다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고 쉼터를 운영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시·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

03 입소(이용) 및 퇴소

가. 서비스 절차



나. 서비스 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이며, 퇴소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기관 후원금 등으로 지원

○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 전문상담(심리상담, 가족상담 등)을 비롯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
 -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 가능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급여를 우선 활용
 - ** 학대피해로 인한 의료비 외에 노인성 질환 등에 따른 의료비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
 - * 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
- 쉼터 퇴소 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가족 복귀 또는 타자녀와의 동거, 시설 입소 등을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쉼터에 제출
 - * 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 프로그램 진행 후 심터에 결과보고 제출

표적집단	목표	서비스 요소	활동내용	산출	성과
학대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	학대피해노인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보호	• 의식주 • 의료지원 • 법적지원 • 생활지도	• 의식주 제공 • 의료적 서비스 제공	• 신체상처 치료 • 안전 확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정	•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여가 및 문화 활동	• 심리검사 및 상담 • 심리 치유 및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여가서비스 제공	• 우울증 감소 • 정서적 안정 회복 • 감정조절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가족기능강화	가족 관계 회복	• 가족지원 • 가족 및 학대 행위자 상담	• 가정방문 • 가족상담 • 학대행위자상담	• 가족관계 개선 • 학대재발 방지
	학대피해노인의 사회화	사회성 향상	•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생활지원	• 사회적응 프로그램 • 평생교육지원 • 복지정보 제공	• 대인관계 개선 • 본인의 욕구 및 의견 표출 •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감
	학대피해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생활 지원	• 귀가지원 • 시설입소 지원 •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 귀가조치 (원가정 복귀) • 사후관리 • 생활시설입소	•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영위 •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 회복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 및 지원 요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제2의2호에 따른 법률 자문 [시행 2021.6.30.]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 입소 및 이용

- (대상) 만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연령기준 : 2017.11.13.부터 적용)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학대피해노인이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 입소를 위한 이송은 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 담당
 - ** 쉼터의 장은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매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단,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보고
 - 그 외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쉼터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우선순위) 입소를 의뢰한 순서로 입소. 단, 동시에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사례(1순위), 비응급사례(2순위), 잠재사례(3순위) 순
 - 시·도는 입소인원이 쉼터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래의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종래 학대피해노인 보호 지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노인학대사례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보호시설 2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각 1개소) 이상 지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 쉼터 입소 의뢰서,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첨부, 보호시설 제출
- 보호시설 : 입소조치 및 보호
 - 시·군·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긴급지원하여야 함

- 타 시설 등에 연계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 학대피해노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노인은 적합한 타 시설 등에 연계하고, 시설 입소 대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 시설에 연계되기 전까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에 일시보호 가능
- ① 치매노인 : 증세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 등에 연계
- ② 노숙노인 :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노인은 입소 불가. 단, 유기된 노인은 학대피해

노인으로 보호 지원

- ③ 정신질환 노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판정된 노인은 의료기관 등에 연계
- (건강검진) '입소 후 72시간 이내' 반드시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입소토록 하고, 입소 후 '1주일 이내' '건강진단서' 및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구비
 - 단, 입소기간이 72시간 이내여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해야함
- (보호기간)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 재입소는 퇴소 후 당해 연도 내에 다시 입소하는 경우를 의미함.
 - ※ 당해 연도 총 입소기간을 초과할 경우 시·도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
- (이용수칙 규정) 입소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등을 쉼터별로 제정하여 운영
 - 이용수칙 안내시 종사자 대상 폭행·폭언 금지 규정 안내
 - ※ 쉼터 종사자(연1회 이상) 및 입소자(입소 시)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해야함.
 - 입소자 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종사자와 입소자 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보호노인은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 자아존중감 척도검사를 72시간이내 실시
 - * 단, 프로그램 이용노인은 서비스 종료 시 검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 전과 후의 우울증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결과를 비교할 것

※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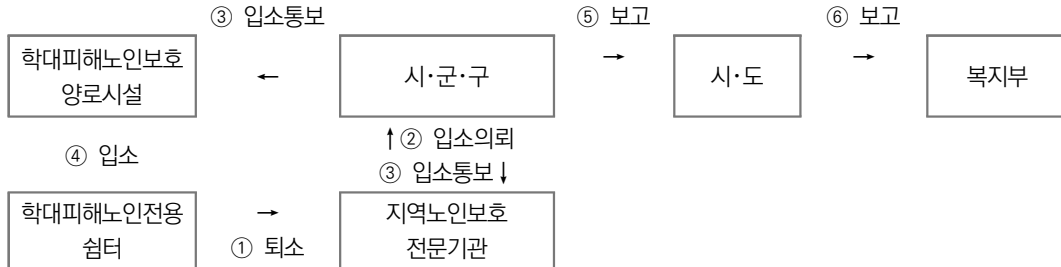
- (외출) 기관 내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유에 한 해 외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 복용약 처방, 면회, 병원진료, 서비스 연계를 위한 타 기관의 심리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등
- (외박)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 문제 혹은 정밀진단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병원 입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이 외박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 내 논의를 통하여 외박 허가가 가능함. 단,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박 불가

라. 퇴 소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 단,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소 사유 등을 파악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하는 자 중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에 노인복지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 담당 공무원은 적극 협조
 - ** 퇴소를 위한 이송은 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 담당
- 법정 지정 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에 이환, 치매증상의 악화 등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 * 다른 지역 쉼터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쉼터상황 고려와 사례판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치 가능하고, 이 경우 입소자의 정보 및 제공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이력을 인계
- 쉼터 퇴소 이후 사례관리
 - 당초 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 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
- 퇴소 시 성인 우울증 자가 검진검사,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실시 후 퇴소처리
 - * 단, 12월 말에는 현재 입소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입소 전과 후의 척도 결과를 비교할 것
-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운영 연계
 -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이 퇴소 이후 입소 가능한 양로시설을 지정하거나 운영
 - 피해노인 쉼터 보호(최대 6개월)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양로시설로 연계

- 지원대상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이후 학대피해노인보호 지정 양로시설로 입소한 만65세 이상 노인

〈양로시설 입소절차〉



①~②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퇴소한 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입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의뢰

* 신속한 입소를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전에 지정된 양로시설에 입소 협의

③ 학대피해노인을 입소의뢰 받은 시·군·구는 즉시 지정된 양로시설로 입소통보

④ 입소

⑤~⑥ 시·군·구 및 시·도는 분기별로 학대피해노인 현황 보고(분기별 예산신청 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퇴소 시에는 양로시설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퇴소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04 기타 행정사항

가. 장부 등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장부

- 쉼터 연혁 관련 기록부, 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 회의록철, 문서철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등
-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 사업에 관한 장부

- 쉼터 입소자 관계서류(건강진단서, 입소자 관리카드, 입·퇴소자 명단 및 동의서, 신병 인수증 등), 쉼터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등
 - ※ 보호노인에 관한 개인별 사례관리 파일 관리 및 보관
- 최근 5년 동안 쉼터 입소 또는 이용한 학대피해노인의 명단 및 상담일지 등 관계서류
- 최근 5년 동안 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은 노인학대행위자의 명단, 전문상담 일지 관련서류
- 보고서 철 및 관계 관청·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문서철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물품관리대장 등
 - * 장부 등의 보관기한은 해당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름

○ 관리규정

-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나. 비밀보장

- 센터 건물에 간판이나 표찰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센터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법(2011.3월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여야 함.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71조)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면회 불가
 - * 단,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 모두가 동의할 경우 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상담원이 동석하여 면회 가능
- 학대행위자 프로그램은 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
- CCTV 촬영 시 촬영에 대한 보호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내문에는 촬영시간, 목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후원금 집행 및 관리

- 센터에 대한 후원금 발생 시
 -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비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기타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해당사항을 준용

라. 입소노인 사망 시 조치사항

- 입소노인 사망 시 병원응급이송 및 가족(부양의무자)에게 인계
-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없는 입소노인 사망 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매장 하거나 화장하여 봉안당 안치
-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따름
-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 사건보고

마. 실적보고

- 센터 운영실적을 해당 시·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 (매달 5일까지)
 - 보호노인에 대한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와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결과*를 시·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 (매년 1월 8일까지)
- * 입소(이용)노인의 수, 우울증 상승 및 감소 노인 수,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등 현황
(기준 : 1.1 ~ 12.31)

0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업 관련 필수·기타 서식

가. 쉼터 입소 필수 서식

* 쉼터입소 동의서·노인보호동의서 및 쉼터입소 의뢰서는 입소 당시 제출해야 하며, 건강진단서·노인학대사례판정서는 입소 후 1주일 이내 구비

- 건강진단서(의료인 작성)
- 쉼터 입소 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서식 1〉)
- 노인보호 동의서(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 이외 가족 작성, 〈서식 2〉)
* 학대행위자 이외 가족이 없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소시킨 직후 시·도에 보고
- 쉼터입소 동의서(입소노인 작성. 단, 노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노인보호 동의서로 같음, 〈서식 3〉)
- 노인학대 사례판정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학대피해노인 또는 보호자 작성, 〈서식 5〉)
- 비상응급 사례 발생에 대한 각서(학대피해노인 또는 보호자 작성, 〈서식 6〉)
- 기타 학대피해노인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은 가능한 경우 징구

나. 쉼터 생활 필수 서식

- 입소자 관리카드(사회복지사 작성, 〈서식 7〉)
- 입소자 건강카드(사회복지사 또는 영양보호사 작성, 〈서식 8〉)

- 쉼터 운영일별 운영일지(사회복지사 작성, 〈서식 9〉)
- 쉼터 근무일지(요양보호사 작성, 〈서식 10〉)
- 입소자 생활일지
 -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작성, 〈서식 11〉)
 - 입소자 면회일지(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서식 12〉)

다. 퇴소 필수 서식

- 쉼터 퇴소 동의서(입소노인 작성, 〈서식 13〉)
 - 신병인수/인계증(보호자 또는 인계 시설 작성, 〈서식 14〉)
- * 타 시설 등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입소자 관리카드, 생활일지, 건강카드 등 필요한 개인정보의 사본을 밀봉하여 지참케 할 것

라. 입소노인 사망 시 필수 서식

- 사망사례 개요(사회복지사 작성, 〈서식 15〉)
- 의사소견서(의료인 작성)

마. 기타서식

-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서(쉼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기타서식 1〉)
- 프로그램 신청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기타서식 2〉)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점검표(쉼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기타서식 3〉)
-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서(쉼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기타서식 4〉)
- 쉼터 입소 확인서(쉼터 작성, 〈기타서식 5〉)
-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쉼터작성, 〈기타서식 6〉)
-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쉼터작성, 〈기타서식 7〉)
- 업무분장표(쉼터 작성, 〈기타서식 8〉)
- 비상시 업무분장표(쉼터 작성, 〈기타서식 9〉)
- 교육실시 현황(쉼터 작성, 〈기타서식 10〉)
- 교육결과 보고서(쉼터 작성, 〈기타서식 11〉)
- 안전점검표(쉼터 작성, 〈기타서식 12〉)
- 화재예방 자율점검표(쉼터 작성, 〈기타서식 13〉)
-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쉼터 작성, 〈기타서식 14〉)
- 프로그램 운영현황(〈기타서식 15〉)

※ 필수 서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서식은 참고용으로 사용

〈서식 1〉

쉼터 입소 의뢰서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가족관계	성명	관 계	성 별	직 업	연락처	비 고
사례현황						
의뢰사유						
의뢰내용 (기간 및 요청 서비스)						
학대피해노인 상태						
신 체 적						
정 서 적						
경 제 적						
의 료 적						
기 타						
노인복지법 제39조19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 학대피해노인의 쉼터 입소를 의뢰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인) _____ 쉼터 소장 귀하						

노인 보호 동의서

접수번호 _____

노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노인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 집 : 직장 :		

1. 보호기관명 : _____

본인 보호자 은 상기노인이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서 입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명 : (인)

_____ 쉼터 소장 귀하

쉼터 입소 동의서

접수번호 _____

노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입소할 노인복지 시설	시설명			
	주소			
	연락처			

본인 _____ 입소노인 _____ 은 노인일시보호 기간 동안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등에 적극 동참하며, 시설의 생활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소자명 : _____ (인)

_____ 쉼터 소장 귀하

〈서식 4〉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사례접수일			사례판정일						
사례판정 결과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급여수급 여부	기초생보(),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기타() (※ 해당 급여는 모두 ○ 표기)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결혼유형						직업유형			
경제적 상황									
특이사항									
사례현황									
사례개요									
판정사유									
피해자 상태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여부		
	장애								
	질환								
일상생활 활동수행 정도	세수/양치질	상 중 하	목욕/샤워	상 중 하	옷 갈아입기	상 중 하			
	화장실이용	상 중 하	식사하기	상 중 하	일어나앉기	상 중 하			
	방밖으로 나오기	상 중 하	집안일하기	상 중 하	식사준비하기	상 중 하			
	집밖으로 외출	상 중 하	약행거먹기	상 중 하	쇼핑/정보기	상 중 하			
특이사항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_____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인) _____ 쉼터 소장 귀하									

〈서식 5 - 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생년월일 :
본 _____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활한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령, 동거인, 직업상태, 결혼상태, 교육수준, 생활 상태,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정도, 기타 사항 등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명기된 항목 ○ 관련사항 : 노인학대 관련 상담일지, 기타 관련 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관한 법령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 ○ 노인학대 발생 여부 판단에 대한 근거 ○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논의자료 및 기관에 권고하는 자료 ○ 노인학대 결과 및 관련 내용을 관할기관(보건복지부·시·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하는 자료 ○ 국가 노인학대예방사업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및 활용 동의 ○ 본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이용 및 연구 등의 자료 활용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열람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서비스 연계 동의 ○ 본인은 위 동의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상기관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노인학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에 필요한 기본 정보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노인학대 관련 사업 진행 및 서비스 연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_____	

〈서식 5 - 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식 6〉

비상응급 사례발생에 대한 각서

접수번호 _____

입소자에게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본 OO쉼터의 처치와 조치를 따를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및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의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OO쉼터의 설명대로 제비용 납부 및 행정절차에 임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3. 방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한 음식은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4. 방안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 내어 주시고, 모든 세탁은 세탁실에서 진행됩니다.
6. 식사를 거르시거나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는 담당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7. 화재, 도난,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담당직원에게 즉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공공물품은 아껴 쓰고 서로 양보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9. 물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알려 주십시오.
10. 직원들과 노인들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1. 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투지 마시고 직원에게 중재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12. 외출 및 외박 하실 때에는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외출(외박)허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3. 약물은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간호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십시오.
14. 병원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동행하십시오.
15.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여 즐거운 노후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니다.

년 월 일
 입소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7〉

입소자 관리 카드					결재	담당	소장			
□ 실시일 : 20 년 월 일 □ 담당 : _____										
기본 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종교	
	현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관계	성명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결혼 여부	☐ 초혼 ☐ 재혼 ☐ 사실혼 ☐ 사별 ☐ 이혼 ☐ 별거 ☐ 가출 ☐ 미혼 ☐ 파악안됨								
	가계도							동거 가족 사항		
생활수준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자 ☐ 일반 ☐ 기타								
	동거실태	☐ 독거노인 ☐ 노인부부가구 ☐ 자녀 부양 가구 (부양 자녀:)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정신사회력	젊었을 때의 직업							생태도		
	삶에서의 특별한 상실이나 중요한 사건, 위기경험									
	인격(성격)특성									
	생활 습관, 버릇									
	스트레스에 대한 유형	☐ 이야기함 ☐ 무시함 ☐ 화를 내고 고함지름 ☐ 술을 마심 ☐ 같은 행동을 반복함 ☐ 불안정함 ☐ 우울해짐 ☐ 긍정적인 대처방법 ☐ 기타 ()								
대상자 및 보호자 욕구										

〈서식 8〉

입소자 건강 카드		결재	담당	소장
□ 실시일 : 20 년 월 일 □ 담당 : _____				
기본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등급	해당자
현재 질환	진단명	주요 질환		
장애 상태	요양등급 판정	□ 무 □ 유(급)		
	장애종류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뇌병변 장애 ☐ 지체장애 ☐ 기타()		
영양 섭취	영양 상태	□ 양호함 □ 영양결핍		
	알려지 유무	□ 무 □ 유(음식_____ 약물_____ 기타_____)		
의사 소통	청취능력	☐ 보통으로 들림 ☐ 큰 목소리라면 들림 ☐ 귓전에서 큰 목소리로 해야 들림 ☐ 거의 들리지 않음		
	발음능력	☐ 정확한 발음 전달 가능 ☐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사표현 가능 ☐ 입모양은 이루어지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있음 ☐ 발음을 알 수 없음(의사소통 불가능)		
정서(기분/감정) 상태	☐ 안정 ☐ 조금 저하 또는 동요(초조함) 있음 ☐ 매우 저하 또는 큰 혼란 있음 ☐ 표출이 거의 없지만 착란 상태			
인지 상태	☐ 흐트러짐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음 ☐ 경도의 흐트러짐 ☐ 큰 흐트러짐으로 생활의 광범위에 지장 초래 ☐ 24시간, 상시의 보살핌 없이 생활 불가능			
이동의 자유	☐ 자력보행(불잡지 않고 걸음) ☐ 무언가 붙잡고 보행 ☐ 기거나 앉은걸음 ☐ 자력으로 휠체어 사용 ☐ 도움 없이 보행 불가능			
음주 및 흡연 여부	□ 무 □ 유()			
약물투여	• 투약약물 : • 약물투여 도움자 : • 투약 시간 :			
ADL 평가				
최종 소견				

〈서식 9〉

센터운영일별 운영 일지										결 재	담당	소장
□ 실시일 : 20 년 월 일 □ 담당 : _____												
입 소 자	현황	인원			신규입소자			퇴소자				
		금일 _명 _남_여	금월 _명 _남_여	누계 _명 _남_여	금일 _명 _남_여	금월 _명 _남_여	누계 _명 _남_여	금일 _명 _남_여	금월 _명 _남_여	누계 _명 _남_여		
	성함				(금일)	(금월)		(금일)	(금월)			
자원봉사자	인원	금일	금월	누계	소속			봉사내용				
입소자면회	인원	금일	금월	누계	시간		면회자		면회내용			
식사	조식	중식		서식		총횟수						
		금일	금월	누계	금일	금월	누계					
프로 그램 진행 내용	건강 증진	프로그램명	시간	참석인원			담당자	총횟수				
			금일	금월	누계	금일		금월	누계			
		0:0~0:0										
	문화 여가											
	사회 기능 회복											
	전문 심리 치료											
상담												
의료지원 내용	대상자	사유				총횟수						
		금일	금월	누계								
비고 (특이사항)												

〈서식 10〉

근무일지		결 재	담당	소장
☐ 실시일 : 20 년 월 일 ☐ 담당 : _____				
담당입소자				
식사체크				
운동체크				
배변체크				
약물체크				
프로그램				
건강관리				
업무내용				
비고				

〈서식 11〉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 담당자 :	결 재	담당	소장

입소자 성명 : _____ 성별 : _____ 생년월일 : _____

날 짜	상담 및 관찰 내용	담당자 의견

〈서식 12〉

입소자 면회 일지 □담당자 :		결 재	담당	소장
입소노인	성명		성별	
방문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노인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	집 :	직장 :
일시 및 장소				
면회내용				

쉼터 퇴소 동의서			
접수번호 _____			
노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퇴소 후 거주 현황	☐ 원가정 복귀 ☐ 입소전 거주지 복귀(원가정복귀 제외) ☐ 타 부양자 지정 ☐ 시설입소(쉼터,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등) ☐ 의료기관 ☐ 별도공간 마련 ☐ 기타 ()		
퇴소 사유	☐ 학대 위험 요인 제거 ☐ 건강악화 ☐ 쉼터거주기간만료 ☐ 입소노인의퇴소요구 ☐ 타부양자와 거주요구 ☐ 노인복지시설 입소 ☐ 병원입원 ☐ 이주 ☐ 사망 ☐ 기타		

본인_____입소노인_____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퇴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입소자명 : _____ (인)

 쉼터 소장

신병 인수/인계증				
접수번호 _____				
노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인수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노인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	집 :	직장 :
노인 인수인계 내용	☐ 원가정 복귀 ☐ 타자녀 가정 ☐ 시설입소() ☐ 의료기관() ☐ 기 타()			
노인 인수인계 사유	☐ 학대위험요인 제거 ☐ 건강악화 ☐ 쉼터거주 기간 만료 ☐ 입소노인의 요구 ☐ 기 타()			

위 노인을 년 월 일 시 분경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인 수 자

성 명 : (인)

소속 및 직책 :

◆ 인 계 자

성 명 : (인)

소속 및 직책 :

_____ **쉼터**

〈서식 15〉

사망사례 개요

접수번호 :

기 관 명 :

작 성 자 :

작 성 일 : 년 월 일

사망노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인적사항	성명		성별	
보호자	성명		노인과의 관계	
입소 시 건강상태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입소 후 건강상태				
사망일시		첫 발견자		
사망 주요원인				
사망 발견 시 개요				
사망 후 조치				

〈기타서식 1〉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서							
작 성 자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소장
성 명				성 별		나 이	
입소일	20 년 월 일 요일			퇴 소 예정일	20 년 월 일 요일		
문제점 및 욕구		결과목표	서비스목표	서비스제공세부내용			
				서비스 내 용	제공 기관	제공 횟수	담당자
1							
2							
3							

〈기타서식 2〉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기관	○ ○ 노인보호전문기관					
구분	☐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 월일		학대 유형	
프로그램 필요사유						
프로그램명						
진행일자						
진행장소						
주진행자			보호진행자(도우미)			
프로그램 내용						
년 월 일 _____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인) _____ 쉼터 소장 귀하						

〈기타서식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점검표				
입소자명 : 관리기간 : 사회복지사 : 점검일 :		결 재	담당	소장
계획목표	서비스 실행 내용	서비스 이행 및 목표 성취정도	사회복지사 의견	
욕구변화 및 문제행동				
☐ 신체기능변화 ☐ 문제행동변화 ☐ 심리정서변화				
사회복지사 의견			☐ 재사정 ☐ 유 지 ☐ 판정회의에 상정 (퇴소절차)	

〈기타서식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 소 일	
입소기간					
평가 내용	서비스 내용	목 표 달성정도	계획의 적합성	서비스전달과정의 적절성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				
종합 평가					
평가일				담당자	

〈기타서식 5〉

쉼터 입소 확인서

노인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 의뢰기관명 :

◆ 보호기간 :

상기 노인을 노인복지법 제39조19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_____ 쉼터 소장 (직인)

〈기타서식 6〉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척도

다음의 각 문항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의 당신의 기분과 상태를 생각해하시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의 번호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번호	내용	점수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뿐이다.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4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아마 벌을 받을 것 같다.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번호	내용	점수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한다.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스럽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 버렸다고 느낀다.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번호	내용	점수
15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2)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0)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1)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2)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0) 나는 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3)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총점		

2.
절단점

- 0~9점 : 우울하지 않은 상태 - 0~15점 : 가벼운 우울상태
- 16~23점 : 중한 우울상태 - 24~63점 : 심한 우울상태
- 21점 cutoff score

〈기타서식 7〉

자아존중감 척도

(index of self - esteem : ISE)

[범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종종 그렇다
⑤ 자주 그렇다 ⑥ 대부분 그렇다 ⑦ 항상 그렇다

순번	내 용	점수
1	나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는 훨씬 더 잘 지낸다고 느낀다.	
3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	
4	내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낀다. *	
5	나는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느낀다. *	
6	나는 내가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7	내가 느끼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	
8	나는 자신감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9	나는 다른 사람과 있으면 매우 신경이 쓰인다.	
10	나는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	나는 추하다고 느낀다.	
12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인생을 더욱 즐긴다고 느낀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14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	
15	나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16	낯선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의식하는 것 같다.	
17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처지가 좋았다면 나도 그들만큼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8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느낀다. *	
19	나는 밖에 나가면 외톨이같이 느낀다.	
2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	
21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	
22	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느낀다. *	
23	나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24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이게 될까 두렵다.	
25	내 친구들은 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	

□ 해석

- 자아존중감 척도는 우선 역문항들(3, 4, 5, 6, 7, 14, 15, 18, 21, 22, 23, 25번 문항)을 채점하고, 그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그리고 이 합산된 점수에서 응답이 이루어진 역문항들의 수를 뺀 이후 100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이 점수를 응답이 이루어진 역문항들의 수에 6을 곱한 수로 나눈다. 결과적으로 최저 0부터 최고 100 사이의 점수가 산출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에는 두 가지 기준 점수가 있는데, 하나는 30 ± 5 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점수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그 이상의 점수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70점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의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점수계산의 예시

- 만약 A라는 사람이 역문항(3, 4, 5, 6, 7, 14, 15, 18, 21, 22, 23, 25번 문항)인 12문항과 그 외 문항(1, 2, 8, 9, 10, 11, 12, 13, 16, 17, 19, 20, 24번 문항)인 13문항 모두를 1번으로 응답했으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역문항의 경우, 1번 응답은 역점수(7점 척도)로 환산해 7점으로 계산되어 총 84점이 된다($7 \text{점} \times 12 \text{문항}$). 그리고 그 외 문항이 1번 응답이면 1점으로 계산되므로 13점이 된다($1 \text{점} \times 13 \text{문항}$).
 각 합계를 더한 후 전체 문항 수인 25를 빼고 그 점수에 100을 곱한다. 즉, $(97 - 25) \times 100 = 7,200$ 의 점수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7,200을 응답이 이루어진 모든 문항들의 수인 25에 6을 곱한 수로 나눈다. 즉, $7,200 / (25 \times 6) = 48$ 이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A의 점수는 48점이다.
 이 A의 점수는 위에서 언급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두 가지 기준 점수에 비추어 보면, 최대 35점(30 ± 5)보다 높은 점수이므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문제가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다소 낮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서식 8〉

업무분장표		
성 명	직 책	업 무 내 용
000	00	기관업무 총괄
000	00	입소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문서접수 및 관리 사업계획 및 보고서 작성 운영일지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관리보관 물품관리
000	00	대상자 케어 위생관리 회계, 재정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000	00	대상자 케어 위생관리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소방 및 안전관리
000	00	대상자 케어 위생관리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시설관리
000	00	식품위생관리 및 조리업무

〈기타서식 9〉

비상시 업무 분장표				
담당자	업무	화재 및 재난발생시	안전사고 발생시	돌발 상황 발생시
000	지휘명령 총괄	- 지휘명령총괄	- 지휘명령총괄	-지휘명령총괄
000 사회복지사	대표자 부재 시 업무대행 상황전달조치	- 연간소방교육계획 - 비상사태 시 비상벨 및 원내 전달 - 전원차단, 관계 기관통보 - 주요서류와 물건 반출	- 전체 점검 및 각 호실 전달 - 보호자와 관계 기관 통보 - 사고 문서관리	- 119신고 및 원내 전파 - 관계기관 통보
000 요양보호사	응급처치 및 구급약품관리	- 응급처치 및 구급약품관리 - 지정병원으로 후송	- 실내 시설 및 설비 안전 점검 -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긴급후송	- 응급처치 - 구급약품관리 - 대피 후 차량 후송
000 요양보호사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 인명구조 -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 활동 - 소화활동상 장애물 제거와 복구	- 실외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 소화활동 - 대피유도
000 요양보호사	화장실, 현관 시설 및 설비 최종점검	- 건물 내 단속 - 비상문 개방 - 대피유도	- 화장실 시설 및 설비 안전 점검	- 건물 내 단속 - 비상문 개방

〈기타서식 10〉

20 년 교육 실시 현황

연번	일자	강사	기관명 (대표)	기관주소	교육대상			인원	담당자	연락처	지역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계					회 / 명						

※ 용도 : 교육 실시에 대한 전체현황을 기록, 현황 파악함

〈기타서식 11〉

교육결과 보고서				
			결 재	소 장
일 시	년 월 일() / 00:00 ~ 00:00(총 분)			
강사명			장 소	
교육기관 현 황	기 관 명			연 락 처
	소 재 지			전 화
	담 당 자			전 송
교육대상			인 원	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사진				
담당자 의 견	성과, 보완점, 특이사항 등 기재			
소요예산	소요내용, 관항목, 금액, 동행자 등 기재			
비 고	홍보물 배부현황, 기타 사항 기재			

※ 용도 : 매회 교육실시 후 결과를 작성하며, 결재 후 보관함

〈기타서식 12〉

안전점검표				
분야	점검목록	점검결과		
		양호	불량	이상시 신고처
화재 예방	☐ 위험성 있는 인화 물질 등의 방치 유무 ☐ 가정용 소화기비치, 위치확인 및 소화전 작동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 동절기 난로 사용 시 안전조치 - 점화상태에서 주유하지는 않는가? - 평평한 바닥에서 주유하는가? - 인화물질이 가까이 있지는 않은가?			국번없이 119 (소방서)
전기 사고 예방	☐ 전깃줄이 낮은 곳은 없는가? ☐ 집을 모두 비울 때 각종 코드는 뽑아두는가? ☐ 물 묻은 손으로 전기코드를 만지지는 않는가? ☐ 1개의 콘센트에 전기, 전열기구의 문어발식접속은 하지 않는가?			전기안전공사
가스 폭발 예방	☐ 중간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는가? ☐ 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가스통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부분은 주1회 이상 비눗물을 발라 확인하는가?			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공급업소
기타	☐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유해물질 (성냥, 라이터, 칼, 약품 등)을 방치하지 않는가? ☐ 선풍기에 안전망은 설치하였는가? ☐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는 않았는가? ☐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 조치를 했는가?			

〈기타서식 13〉

화재예방 자율점검표				
주택 구분	1. 일반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타	점검날짜	년 월 일	
		점검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1. 화기취급 시설		연소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① 가스레인지의 점검		사용 중 연소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② 보일러의 관리상태		소화기 주변에는 두지 않았다.		
③ 화기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보관				
2. 가스시설		배관의 연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① 전기배관의 누설점검		중간 잠금 밸브는 사용 후 잠근다.		
② 안전장치 및 밸브의 정상작동		옥외에 보관함을 만들어 보관한다.		
③ 가스통의 보관상태				
3. 전기시설		배선과 콘센트가 정비되어 있다.		
① 전기배선의 상태		1개의 콘센트에 3 - 4개 이상 분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 콘센트의 설치 및 사용상태		과전류차단기나 스위치는 정상 작동한다.		
③ 안전장치 및 배전반				
4. 유류취급에 관한 사항		용기는 안전한 별도의 장소에 둔다.		
① 보관장소 및 저장용기		난로에 연료를 넣을 때는 불을 끈다.		
② 취급의 안전관리		항상 많은 양을 비축하여 둔다.		
5. 외출 시 안전점검과 일일점검 생활화		집을 비울 때는 가스차단, 전원차단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취침 전후 전기, 가스시설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6. 소화기 비치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사용방법을 알고 있다.		
		소화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기타서식 14〉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부
1.개인위생	○ 설사·발열·구토 및 화농성질환 여부 ○ 가족 및 동거인의 상기질환 여부 ○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청결여부 ○ 손세척 및 소독의 필요 숙지여부 ○ 손톱의 청결 및 장신구(반지등) 착용여부 ○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상태 여부		
2.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취급	○ 부패·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 제품 등 사용여부 ○ 저장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상태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보관 여부 ○ 적정보관 온도 준수여부 ○ 가열조리식품과 비가열조리식품의 구분여부 ○ 가열조리식품의 신속냉각 및 적정 보관 여부 ○ 과채류 등 원료의 절단 시 세척 선행 여부 ○ 식품 제조·가공·조리 시 마스크 착용여부		
3.조리·가공 설비 및 시설	○ 오염구역,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구분여부 ○ 방충, 방서 및 이물혼입 방지 여부 ○ 육류, 채소류 등 원료별 조리기구의 구분 및 사용여부 ○ 칼·도마·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의 적정 세척, 소독여부 ○ 작업장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여부 ○ 작업장 바닥의 물고임 방지 및 배수구 개폐용이 여부		
4.기타 준수 사항 이행	○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 시 식수 수질 검사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보관 또는 조리·가공 등 재사용여부 ○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관리 여부		
5. 점검자 의견			

〈기타서식 15〉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점검항목	비 고
건강증진	- 손체조, 건강체조, 건강체크, 뇌체조, 마사지, 요가와 명상, 기체조, 방문간호서비스 등	
문화여가	- 공원산책, 사회기능회복, 국산차 만들기, 나들이, 다도체험, 레크레이션, 문화체험, 산수화그리기, 켈트 등	
사회기능 회복	- 공연관람, 국어교실, 미술교실, 생일잔치, 시설견학, 영화관람, 이마용서비스, 자서전, 직업재활, 직업상담, 목욕서비스, 복지관이용 등	
심리치료	- 놀이치료, 도예치료, 명상치료, 모래치료, 무용·동작치료, 문예치료,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숲치유, 요리 치료, 웃음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인지화상, 작업치료, 점핑클레이, 종이접기, 다도치료, 타로상담 등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노인학대 상담전용 전화 1577-1389 또는 110, 129)

구 분	주 소	연 락 처	홈 페이지
중앙(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02)3667-1389	www.noinboho.org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10길 30-1 5층	02)3157-6389	www.sw1389.or.kr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301호(천호동, 삼화빌딩)	02)470-1389	www.se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www.ic1389.or.kr
인천광역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www.innoin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 1층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052)265-1389	www.us1389.or.kr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 포인트타운 505호	031)736-1389	www.k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예찬빌딩 5층	031)821-1461	www.gnnoin.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www.ggw1389.or.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경기도노인회관 4층	031)268-1389	www.gepa.co.kr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프라자, 406호	031)978-1389	www.gg1389.or.kr

구 분	주 소	연 락 처	홈 페이지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강원도사회복지관 2층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wn1389.or.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www.cnn1389.or.kr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1길 79 김제시노후설계 종합지원센터 1층	063)443-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동부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84	061)742-3071	www.jn1389.or.kr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0,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상북도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상북도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http://gbwn1389.or.kr
경상북도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4)716-1389	http://snoi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금강노인복지관 C동 1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	064)763-1999	http://sgpnoin.org/

2023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기관운영 -

인 쇄 일	2023년 4월
발 행 일	2023년 4월
발 행	보건복지부
발 행 기 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T. 02) 3667-1389
인 쇄	경성문화사 T. 02) 786-2999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